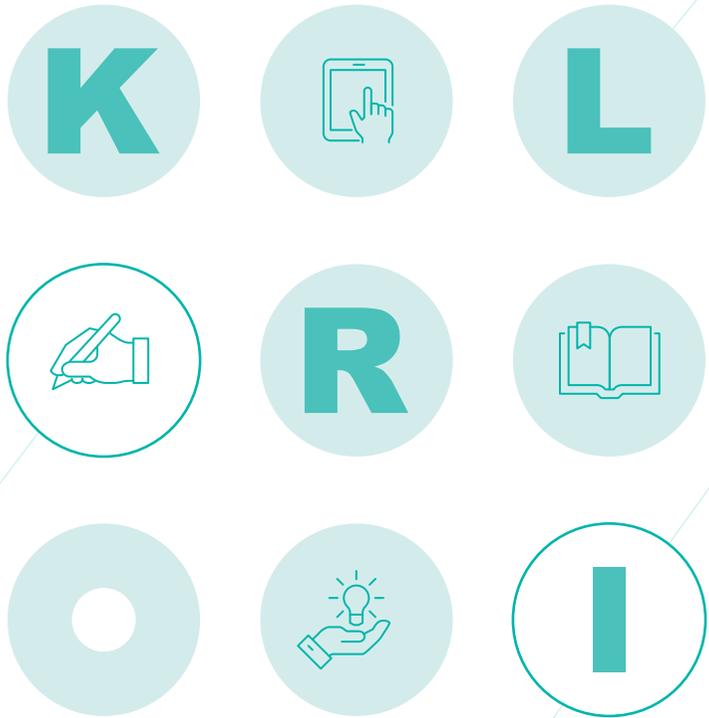


# 농업·농촌 분야 법령의 성인지적 개선 방안 연구

장민선





# 농업·농촌 분야 법령의 성인지적 개선 방안 연구

A Study on Gender-Cognitive Improvements of the Agricultural  
and Rural Area Acts

연구책임자 : 장민선(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Jang, Min-Sun

2021. 6. 28.



## 연구진

연구책임	장민선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연구원	엄보영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유승하	이화여자대학교	박사과정 수료
원외 심의위원	박복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원내 심의위원	차현숙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왕승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연구자문위원	김정섭	선임연구위원(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둘순	연구위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	
	최윤지	농업연구관(국립농업과학원)	
연구감리위원	강문수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요 약 문

### I. 배경 및 목적

#### ▶ 연구의 배경

- 농업과 농촌에서 여성의 비중과 역할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은 그 노동의 가치나 농업인으로서의 지위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서 현재 자신의 지위가 남성보다 낮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전체의 81.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것은 농가(農家) 중심의 농업·농촌 문화에서 여성들은 남성과 함께 농사일을 담당하면서도 남성 중심의 가부장 질서 속에서 가사, 돌봄의 역할까지 수행하며 부차적이고 종속적인 지위를 경험해왔기 때문임
- 농업 경영에서 여성의 역할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여성농업인의 권익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01년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 제정되었으나, 여전히 여성농업인의 법적, 사회적, 경제적 지위는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
- 농업·농촌의 성평등 실현을 통해 비로소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이 가능할 것이므로, 농업·농촌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서 성인지적 관점이 강조될 필요가 있고, 그 근거가 되는 법령도 성인지적 관점에서 분석이 필요함

## ▶ 연구의 목적 및 방법

- 본 연구는 농업·농촌을 규율하는 다양한 법령들 중에서 중앙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양성평등한 농업·농촌 정책을 추진하고 여성농업인의 권익 증진, 지위 향상, 삶의 질 보장을 실현하는데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법령을 대상으로 하여, 이를 성인 지적 관점에서 분석, 평가함으로써 차별적인 요소들을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각각의 하위법령들을 분석 대상으로 삼아, 2021 성별영향평가 지침의 기준을 활용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 특성, 성별 균형 참여, 성별 통계의 4가지 기준에 따라 분석을 수행함

## II. 주요 내용

### ▶ 분석 대상 법령의 체계 및 주요 내용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1999년 농업·농촌 관계법의 기본 원칙을 정하고자 제정된 「농업·농촌 기본법」은 그 이후 농업·농촌과 국민 식생활의 변화, 자유무역협정 추진 등으로 인해 농업 분야의 경쟁력 강화, 농업인 소득안정,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등을 위해 2007년 전부개정을 통해 현재의 기본법이 되었음
  - 이 법은 농업·농촌 관련 법제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농업인의 정의 등 기본 개념과 농업·농촌의 기본 이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의 기본 방향, 농업인력의 육성, 농지 이용 및 보전, 농촌지역 발전과 삶의 질 향상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이 중에서 농업인의 정의와 여성농업인 육성에 관한 규정은 여성농업인의 법적 지위 향상에 관한 논의의 근거가 되고 있음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 이 법은 농어업인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농어촌 지역 개발에 관한 종합적·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04년 제정되었음
  - 농어업인의 복지에 관한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어서 성별에 따른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임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이 법은 농어업 경영의 단위로서 농어업경영체의 등록 및 이에 대한 지원을 통해 농어촌의 지속적인 발전과 농어업 경영체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2009년 제정되었음
  - 농어업경영체가 농어업이나 농어촌에 관련된 용자·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정보를 등록해야 하는데, 이 때 농어업 종사자가 ‘경영주’와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구분되며, 경영주의 배우자인 ‘경영주 외 농업인’에 대해서 ‘공동경영주’로 표시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어 있는 바, 여기에 차별적 요소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 ▶ 분석 대상 법령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

-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 법령에 성별 구분조항이 있는지, 또는 법령상 용어에 성별 고정관념이 반영되어 있는지, 그리고 법령상 조치에 성별 고정관념이 표현되어 있는지 검토함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성별 구분 규정은 제27조(여성농업인의 육성)로서, 농업·농촌에서의 성평등 실현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할 수 있으나, 이 법에 따라 여성농업인을 정의할 때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여성들은 정책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현행 농업인 기준이 여성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8조(농어촌 여성의 복지증진)에 규정된 ‘보육여건 개선’은 보육이 여성의 역할, 책임이라는 고정관념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함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현재 성별 구분 조항이 존재하지 아니하나, 농어업경영체 등록에 있어서 인정되는 공동경영주 제도가 경영주와는 달리 겸업 소득이 인정될 경우 공동경영주 및 농업인 자격이 박탈되는 차별적 요소가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함

#### ○ 성별 특성

- 법령에 성별에 따른 신체적, 사회·문화적 차이 등을 고려하였는지, 그렇지 않다면 성별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함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장 제3절에 규정된 농업인력의 육성에는 가족농가의 경영안정과 농업 종사자의 육성이 규정되어 있는데, 가족농가에서의 성평등한 문화 조성을 위한 가족경영의 합리적 개선 등의 내용이 포함될 필요가 있음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농어업인 질환의 예방·치료 등 지원)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작업형태의 차이에 따라 작업환경 및 유발 질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에도 지원 정책 마련에 성별고려가 규정되지 아니함

### ○ 성별 균형 참여

- 법령상 위원회 규정에 성별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는지, 위원회 구성을 위한 자격 요건에 특정 성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부분은 없는지 검토하는 것임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근거한 중앙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정책 결정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성별 고려가 이루어지는 것인지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을 고민할 필요가 있고, 농협 등 생산자단체의 구성에 있어서도 여성조합원 및 여성임원의 비율은 아직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에도 별도의 성별 고려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나, 양성평등기본법상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 다만, 이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의 실무위원회 구성에는 성별 고려 규정이 존재하고 있어서 이를 통일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위원회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 ○ 성별 통계

- 법령상 서식 또는 실태조사 규정에 성별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함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는 실태조사나 통계 관련 규정으로서 제55조(북한의 농업 생산체제의 조사·연구 등)가 존재하는데, 여기에도 성별에 따른 통계 생산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는 농어업인 등의 복지실태, 사회안전망 확충 현황, 교육여건 등 농어업인들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성별 통계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에 규정된 농업법인의 운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는 조합원의 인적사항, 주소, 및 출자현황, 사업범위, 소유한 농지 규모와 경작유무 등 현황을 조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조합원의 성별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농업법인의 구성에 대한 성별 통계 근거가 부재함

#### ▶ 분석 대상 법령의 성인지적 분석을 통한 개선과제

- 성인지적 관점에서 농업인 개념의 재검토
  - 현행 농업인의 정의는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다양한 주체들을 포괄하고 있지 못하고, 농업인으로 확인받기 위한 절차가 여성들에게는 여전히 경영주인 남성에게 의존하도록 규정된 측면이 있어 현재 농업인의 정의와 농업인 확인서 발급 규정이 성별에 따라 어떠한 효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공동경영주는 사실상 여성농업인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데, 법적 지위가 불명확한데다가 경영주와 대등한 지위를 갖지 못하고, 겸업 소득 발생시 농업인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차별적 결과가 발생하므로 이러한 차별적 요소를 제거하고, 공동경영주의 법적 지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 정책 수립 및 시행에 성별 특성 반영
  - 가족농가의 경영안정과 농업 종사자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시행시 가족 내 성평등 문화의 확산 및 가족농의 합리적 경영 개선 등의 내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농업인 질환 예방·치료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시 성별 특성 반영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명시되어 있지 않고, 현재 질환 현황 조사시 성별에 따른 통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을 뿐이므로 해당 조항에 성별 특성을 고려하도록 개정이 필요함
- 정책 결정에의 성별 균형 참여의 효과성 제고
  - 분석 대상 법령의 위원회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위촉직 위원의 구성에 성별을 고려하도록 규정하지 않은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양성평등기본법의 요구를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개별 위원회 규정에 성별을 고려하도록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지만, 그보다 위원회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성별에 대한 고려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에 대한 성별관련성 검토, 위원에 대한 성인지 교육 실시 등의 제도적 보완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성별 통계 생산의 근거 마련
  - 분석 대상 법령의 실태조사나 통계 생산 규정에 성별을 규정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성별 통계 생산이 이루어지도록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농업·농촌 분야에서 인적 통계를 작성할 때에는 성별로 구분하여 결과를 산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음

### Ⅲ. 기대효과

- 농업·농촌 분야의 주요 법령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함으로써 법령의 제·개정시 성인지적 관점이 도입되고, 나아가 입법의 성평등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함
- 양성평등한 농업·농촌 정책을 수립 및 추진하고,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 권리 신장 등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농업·농촌에서의 성평등 실현 및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주제어 : 여성농업인, 성평등, 성인지분석, 공동경영주, 성별통계

## Abstract

### I. Backgrounds and Purposes

- Despite the growing proportion and role of women in agriculture and rural areas, women are not properly recognized for their labor value or status as farmers.
  - This is because in farm-oriented agricultural and rural culture, women have experienced secondary and subordinate status by playing the role of housework and care in the male-centered patriarchal order while in charge of farming with men.
- Recognizing the role and importance of women in agricultural management, the Women's Agricultural and Fishery Promotion Act was enacted in 2001 to improve the rights and quality of life of female farmers, but the legal, social, and economic status of female farmers is still not properly guaranteed.
- Since sustainable agriculture and rural areas will be possible only through the realization of gender equality in agriculture and rural areas, gender-sensitive perspectives need to be emphasized in the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agricultural and rural policies, and the underlying laws need to be analyzed from a gender-sensitive perspective.

- Among the various laws governing agriculture and rural areas, this study aims to find and evaluate discriminatory factors and derive improvement measures by targeting laws closely related to promoting gender-equal agricultural and rural policies, improving rights, status, and quality of life for female farmers.
- Analysis is conducted according to four criteria: gender classification or stereotypes, gender characteristics, gender balanced participation, and gender statistics for the Framework Act on Agriculture, Rural Area and Food Industry, Special Act on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For Farmers and Fishermen and Rural Development, Act on the Promotion and Support of Agricultural and Fishery Management Companies, and sub-laws.

## II. Major Content

### ▶ The system and main contents of the laws and regulations to be analyzed

- Framework Act on Agriculture, Rural Area and Food Industry
  - This Act presents basic concepts such as the definition of farmers, basic ideologies of agriculture and rural areas, basic directions of agricultural and food industry policies, fostering agricultural manpower, using and preserving farmland, and improving quality of life.
  - Among them, the definition of farmers and regulations on fostering female farmers are the basis for discussion on improving the legal status of female farmers.

- Special Act on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and Rural Development
  - This Act was enacted in 2004 to promote the welfare of farmers and fishermen, improve educational conditions in rural areas, and establish a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support system for the development of rural areas.
- Act on the Promotion and Support of Agricultural and Fishery Management Companies
  - This Act was enacted in 2009 with the aim of continuing development of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and strengthening the competitiveness of farming and fishing businesses through registration and support of farming and fishing businesses as a unit of farming and fishing management.
  - In order for agricultural and fishing management to receive loans and subsidies related to farming and fishing, certain information must be registered, where agricultural and fishing workers are divided into "management owners" and "non-management farmers," and it is necessary to check if there are any discriminatory factors.

▶ **Gender-sensitive analysis of the laws to be analyzed**

- Gender distinction or stereotypes
  - It is to review whether there are gender classification provisions in the statute or whether gender stereotypes are reflected in legal terms, and to examine whether gender stereotypes are expressed in legal measures.

- In the Framework Act on the Agriculture, Rural Area and Food Industry, the gender classification regulation is Article 27 (fostering female farmers), which can be said to be a necessary measure to realize gender equality in agriculture and rural areas, but under this law, women who do not meet the criteria can be excluded from the policy.
  - The "improvement of childcare conditions" stipulated in Article 18 (promotion of welfare for rural women) of the "Special Act on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For Farmers and Fishermen and Rural Development" needs to be defined gender-neutral because childcare can be attributed to the stereotype of women's role and responsibility.
  - The Act on the Promotion and Support of Agricultural and Fishery Management Companies does not currently have a gender classification clause, but the joint management system recognized for registration of agricultural and fishing management is actually a system for female farmers.
- Gender characteristics
- Whether the laws and regulations take into account physical, social, and cultural differences according to gender, and if not, whether it is necessary to consider gender characteristics.
  - The fostering of agricultural personnel stipulated in Chapter 3, Section 3 of the Framework Act on the Agriculture, Rural Area and Food Industry stipulates the management stability of family farmers and fostering agricultural workers, and it is necessary to include contents for gender equality in family farmers.

- In Article 14 of the Special Act on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For Farmers and Fishermen and Rural Development, there may be differences in the working environment and induced diseases between men and women. Gender consideration is necessary when preparing treatment and support policies.
- Gender-balanced participation
  - It is to examine whether the statutes stipulate that gender should be considered in the committee regulations, and whether there is any adverse effect on specific sex in the qualification requirements for constituting the committee.
  - The Central Agriculture, Rural Area and Food Industry Policy Council based on Article 15 of the Framework Act on Agriculture, Rural Area and Food Industry seems to meet the requirements of Article 21 of the Framework Act on Gender Equality, and it is necessary to consider institutional supplementation to ensure that gender is actually considered in the policy-making process.
  - In the composition of producer organizations such as Nonghyup, the ratio of female union members and female executives is still low, so it is necessary to seek institutional support measures for this.
  - Article 10 of the Special Act on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For Farmers and Fishermen and Rural Development does not have separate gender consideration regulations, but meets the requirements of the Framework Act on Gender Equality. However, there are

- provisions for gender consideration in the composition of the Working Committee under Article 6 (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is Act, so it is necessary to review whether to reflect it in the law.
- The Committee regulations do not exist in the Act on the Promotion and Support of Agricultural and Fishery Management Companies.
- Gender statistics
- It is reviewed whether or not gender is specified in the attached form or fact-finding survey regulations of the Act.
  - In the Framework Act on Agriculture, Rural Area and Food Industry, there are regulations related to actual conditions and statistics in Article 55 (investigation and research of North Korea's agricultural production system, etc.), so it is necessary to stipulate statistical production according to gender.
  - Article 8 of the "Special Act on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For Farmers and Fishermen and Rural Development" does not provide a basis for gender statistics, even though it stipulates to investigate matters necessary for welfare promotion and regional development.
  - The investigation into the operation status of agricultural corporations stipulated in Article 20-2 of the Agricultural and Fishery Management Act stipulates the personal information, address, investment status, business scope, farmland size, and cultivation status of members. Since the gender of the members is not defined here, there is no basis for gender statistics on the composition of agricultural corporations.

- ▶ **Improvement tasks through gender-sensitive analysis of laws and regulations to be analyzed**
  - Reviewing a concept of farmers from a gender-sensitive perspective
    - The current definition of farmers does not cover various subjects engaged in agriculture, and the procedure for being identified as farmers is stipulated to rely on men who are still managers, so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current definition of farmers and the issuance of farmers' certificates.
    - Co-management is actually a system created for female farmers, but it is necessary to eliminate these discriminatory factors and clarify the legal status of co-management because co-management does not have the same status as managers and discriminatory consequences of losing farmers' qualifications.
  - Reflecting gender characteristics in the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policies
    - When establishing and implementing policies to stabilize the management of family farmers and foster agricultural worker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contents such as spreading a culture of gender equality in the family and improving the rational management of family farmers.
    - Although it is necessary to reflect gender characteristics when establishing policies to support farmers' disease prevention and treatment, it is necessary to revise it to consider gender characteristics

as it only stipulates that statistics based on gender are established when investigating the current disease status.

- Improving the effectiveness of gender balance participation in policy decisions
  - As a result of comprehensive examination of the committee regulations of the laws and regulations subject to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requirements of the Framework Act on Gender Equality were satisfied, even though the composition of commissioned members did not stipulate gender consideration.
  - Although it is possible to consider ways to stipulate gender in individual committee regulations, it is necessary to seek institutional supplementary measures such as reviewing gender relevance and conducting gender recognition education for members so that gender can be actually considered in the committee's policy-making process.
- Preparing the basis for the production of gender statistics
  -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basis for gender statistics production in cases where gender is stipulated or not in the actual conditions of laws and regulations to be analyzed, and furthermore, when preparing personal statistics in agriculture and rural areas, it can be considered.

### III. Expected Effects

- By analyzing major laws and regulations in the agricultural and rural fields from a gender-sensitive perspective and deriving improvement measures, a gender-sensitive perspective is introduced when enacting or revising laws, and further contributes to enhancing gender equality in legislation.
- It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realizing gender equality and realizing sustainable agriculture and rural areas by establishing and promoting gender equality policies, improving the status and rights of female farmers, etc.

▶ **Key Words** : Female farmers, Gender equality, Gender cognitive analysis, Co-management, Gender statistics.



# 목차

농업·농촌 분야 법령의 성인지적  
개선 방안 연구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요 약 문 .....	5
Abstract .....	13

## 제1장 서론 / 27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9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32
1. 연구의 범위 .....	32
2. 연구의 방법 .....	36

## 제2장 분석 대상 법령의 체계 및 주요 내용 / 39

제1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41
1. 입법 목적 .....	41
2. 연혁 .....	41
3. 주요 내용 .....	44
제2절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	48
1. 입법 목적 .....	48
2. 연혁 .....	48
3. 주요 내용 .....	51
제3절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54
1. 입법 목적 .....	54
2. 연혁 .....	54
3. 주요 내용 .....	55

## 제3장 분석 대상 법령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 / 59

제1절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	61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62
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	68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70
제2절 성별 특성 .....	77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78
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	79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82
제3절 성별 균형 참여 .....	82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83
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	89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91
제4절 성별 통계 .....	91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94
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	95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96

## 제4장 분석 대상 법령의 성인지적 분석을 통한 개선과제 / 99

제1절 성인지적 관점에서 농업인 개념의 재검토 .....	101
1. 농업인 요건의 성별 효과성 검토 .....	101
2. 공동경영주 제도 개선 .....	103

# 목차

농업·농촌 분야 법령의 성인지적  
개선 방안 연구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제2절 정책 수립 및 시행에 성별 특성 반영 .....	104
1. 가족농 경영안전과 농업인력 육성 정책 수립에 있어서 성별 특성 고려 .....	104
2. 농업인 질환 예방·치료 지원에의 성별 특성 고려 .....	105
제3절 정책 결정에의 성별 균형 참여의 효과성 제고 .....	105
1.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성별 고려 .....	105
2. 생산자단체 대표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지원 .....	106
제4절 성별 통계 생산의 근거 마련 .....	107

## 제5장 결론 / 109

참고문헌 .....	115
------------	-----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의 통계에 따르면, 농가 인구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농가 내 여성비율은 50%를 상회하고 있고, 농가인구의 고령화는 여성가구원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영농형태가 미작 중심에서 여성의 노동력이 많이 투입되는 작목 다변화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up>1)</sup> 또한, 여성농업인의 농사일 담당 비중은 평균 53.9%에 달하며, 전체 농사일의 75%를 담당하는 여성농업인이 24.2%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sup>2)</sup> 농업과 농촌에서 여성의 비중과 역할이 더욱 커지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성 농업인들이 본인의 직업적 지위를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로 인식하는 경우보다 가족종사자로 인식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sup>3)</sup>, 현재의 자신의 지위가 남성보다 낮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전체의 81.1%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sup>4)</sup> 이처럼 농업·농촌에 있어서 여성의 비율

1) 통계청의 농림업총조사에 의하면, 농가인구는 1990년 666만명에서, 2005년 343만명, 2019년에는 225만명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고, 이 중 여성은 1990년 338만명(50.8%), 2005년 176만명(51.2%), 2019년 115만명(51%)으로 나타났다. - 임소영 외, 제5차 여성농업인육성기본계획(2021-2025) 수립방안 연구, 농림축산식품부 연구용역 보고서, 2020, 21-22쪽.

2) 여성농업인 중에 농가의 농사일 중 25~50%를 담당하는 비중은 38.5%, 50~75%를 담당하는 비중은 28.3%, 75% 이상을 담당하는 비중은 24.2%인 것으로 나타났다 - 안 석 외, 2018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농림축산식품부 연구용역 보고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9, 50쪽.

3) 여성농업인 본인의 직업적 지위를 공동경영주 또는 경영주로 인식하는 경우는 38.4%, 가족종사자로 인식하는 비율은 61.6%로 나타났다 - 안 석 외, 2018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농림축산식품부 연구용역 보고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9, 46쪽.

4) 여성 농업인의 지위를 남성과 비교했을 때 ‘예전보다는 높지만 남성보다 낮거나, 여전히 남성보다 낮다’는 응답이 전체의 81.1%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향후 여성농업인의 지위에 대해서는 ‘남성과 같아야 한다’는 의견은 연령이 낮을수록 높아 30대와 40대에서 75%~77% 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안 석 외, 2018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농림축산식품부 연구용역 보고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9, 61쪽.

및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은 그 노동의 가치나 농업인으로서 지위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농가(農家)<sup>5)6)</sup> 중심의 농업·농촌 문화에서 남성들이 농사일 및 집안을 대표하는 역할을 도맡아 해온 반면, 여성들은 남성의 농사 일을 도우면서 집안 일, 돌봄까지 떠안게 되면서 과중한 일에 시달리면서도 여전히 부차적이고 종속적인 지위를 경험해왔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농업 일은 대부분 부부 공동의 노동에 의존하고 있음에도 농촌 사회의 가부장적 남성성과 남성 중심의 가족질서로 인해 여성의 기여도나 노동가치가 적절히 평가받지 못하고 평가 절하되어 온 것이다.<sup>7)</sup>

이와 같이 농업경영에서 여성농업인의 역할과 중요성이 높아지고, 여성농업인의 권익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여성농업인 육성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01년 12월 31일에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보호·지위 향상·삶의 질 제고 및 전문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건강하고 농촌가정 구현과 농어업의 발전을 기여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제1조), 제5조에 따라 5년마다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sup>8)</sup> 및 시행계획이 수립, 시행되어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지위 향상, 모성권 보장 및 보육여건 개선, 도우미 지원사업, 건강관리 지원사업,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 등 여성농업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 5) 농업용어사전에서 따르면, 농가(農家)는 가구원이 농업 사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경영자 또는 동업자 가구로 구성되며 가계의 주된 소득이 농업으로 이루어지는 가구를 의미한다. - 농촌진흥청의 농사로 홈페이지에서 운영하는 농업용어사전에서 '농가'를 검색한 결과이다. (<https://www.nongsaro.go.kr/portal/ps/psq/psqb/farmTermDicLst.ps?pageIndex=1&pageSize=4&menuId=PS00064&searchTagWord=%EB%86%8D%EA%B0%80&option=0&sWordNm=%EB%86%8D%EA%B0%80>)(2021. 6. 25 최종 검색).
- 6) 현재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8호는 “농가”란 그 세대주 또는 동거하는 가족이 가계(家計) 유지를 목적으로 직접 농작물 또는 산림작물을 재배하거나 가축을 사육하는 가구 단위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7) 이수미, 여성농민 성불평등 실태조사를 통해 본 여성농민의 현실과 성평등한 농촌, 성평등한 농촌! 여성농민 법적 지위 보장을 위한 여성농민 정책대토론회 자료집, 2020. 8. 19, 69쪽.
- 8)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5조에 따라 2001년부터 5년마다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수립, 시행되고 있으며, 현재 제5차 기본계획(2021~2025)이 시행중이다. 제5차 기본계획은 '성평등을 통한 여성농업인의 행복한 삶터, 일터·쉼터 구현'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성인지적 농업·농촌정책 추진체계 강화 및 농업·농촌 정책 여건 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여성농업인의 공동체 역할·지위 확대를 기본 추진방향으로 제시했으며 이에 따라 양성이 평등한 농업·농촌 구현, 직업적·사회적 역량 강화, 복지·문화서비스 향유 및 건강·안전 제고, 농촌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미래세대 육성 등 총 4대 전략과제, 16개 중점과제, 42개 세부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 농식품부, 제5차 ('21~'25)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추진, 농림축산식품부 2020년 12월 31일 보도 자료 참조(<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30083>)(2021. 6. 25 최종 검색)

지난 20년간 여성농업인의 직업적 지위, 권리 향상,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한 여러 정책들이 수립, 시행되어 왔지만, 여전히 현장에 있는 여성농업인들이 체감하는 효과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sup>9)</sup> 여성농업인들이 성별 역할에 따른 정당한 분배를 요구하는 양성평등과 보편적 복지에 대한 욕구가 증대하고 있고, 농업환경이 단순 생산에서 가공, 로컬푸드, 사회적 농장 등으로 공동체와 협업의 중요성이 확대되면서 여성농업인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시대적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미래의 농업 인력으로서 여성농업인을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성인지적인 농업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sup>10)</sup>

여성농업인 육성 정책의 핵심 가치는 ‘농업·농촌에서의 성평등 실현’이라고 할 수 있다. 농업·농촌에 잔존하는 남성 중심의 문화로 인해 도시 지역에 비해 여성농업인의 권리나 지위의 보장이 미흡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제도들이 마련되어 왔지만, 현행 법령상 농업·농촌에서의 성평등 실현을 위한 내용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 제정되었다고 해서 다른 법령에서 성평등 실현에 관한 내용이 규정될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 인식 하에서 본 연구는 농업·농촌을 규율하는 다양한 법령들 중에서 정책 수립 및 시행의 근거가 되는 법률 3개를 선정하여 이를 성인지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성인지적 관점’이란 남성과 여성에 미칠 영향에 초점을 두고 각종 제도와 정책을 검토하는 관점으로서, 남녀 성차별의 개선이라는 문제 의식에 기반하여 각종 제도나 정책에 포함된 특정 개념이 특정 성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은지, 성역할 고정 관념이 개입되어 있는지 아닌지 등의 문제점을 검토하는 관점을 말한다.<sup>11)</sup> 겉으로는 성별 중립적으로 보이는 규정이라도 사회적 인식, 관행 등으로 인해

9) “여성농업인 농사일 비중 지속 증가, 수요 고려한 정책 필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9년 3월 20일 보도자료 1쪽. (<https://www.krei.re.kr/krei/selectBbsNttView.do?key=103&bbsNo=25&nttNo=129133>)(2021.06.25 최종검색)

10) “여성농업인 정책 핵심키워드는 역량 강화·성별격차 해소”, 한국농어민신문 2021년 1월 12일 기사 참조. (<https://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2124>)(2021. 6. 25 최종 검색)

11) [네이버 지식백과] 성인지적 관점 [性認知的 觀點, gender perspective] (행정학사전, 2009. 1. 15., 이종수)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76872&cid=50301&categoryId=50301>)(2021. 6. 25 최종 검색)

성별에 따라 차별적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바, 성인지적 관점에서 해당 법률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농업·농촌 분야 법령 가운데 중앙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양성평등한 농업·농촌 정책을 추진하고 여성농업인의 권익 증진, 지위 향상, 삶의 질 보장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데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법령들을 대상으로 이를 성인지적 관점에서 분석, 평가함으로써 차별적인 요소들을 발굴하고, 구체적인 법령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 연구의 범위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소개하고 있는 농업·농촌 분야 법령은 총 72개이며 그 목록은 아래와 같다.<sup>12)</sup>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X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령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규칙
농어촌정비법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한국농수산대학설치법	한국농업대학설치법 시행령	X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x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x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x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농지법 시행규칙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 시행령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 시행규칙
농업협동조합법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x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x	x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령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x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외농업개발협력법	해외농업개발협력법 시행령	해외농업개발협력법 시행규칙
농촌진흥법	농촌진흥법 시행령	농촌진흥법 시행규칙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정	농촌진흥청 시험·분석 및 검정의뢰 규정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x	x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법령정보에 소개된 내용을 저자가 표로 구성

12)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의 법령 정보에 소개된 농업·농촌 분야 법령 목록이다. - [https://www.mafra.go.kr/mafra/353/subview.do#law\\_info01\\_01\(2021. 6. 25 최종 검색\)](https://www.mafra.go.kr/mafra/353/subview.do#law_info01_01(2021. 6. 25 최종 검색)).

본 연구에서는 이 중에서 농업 종사자와 농촌 지역 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농업·농촌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법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다음의 3개 법률 및 각각의 하위 법령을 성인지적 분석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첫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은 농업·농촌 관련 분야를 아우르는 기본법으로서 농업·농촌 분야 법령의 기본이념이나 기본원칙, 정책 방향 등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법에 농업·농촌에서의 성평등 실현이라는 중요한 목표가 반영되어 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법에는 농업인에 대한 정의 규정이 존재한다. 농업인에 대해서는 「농지법」에서도 별도로 규정하고 있긴 하나, 이 법에 규정된 농업인의 정의가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나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등 다른 법령에 그대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성별에 따라 차등적인 영향을 가져오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 법에서는 농업·농촌 분야의 기본계획, 주요 의사결정, 농업 인력 육성 등에 대한 조문을 두고 있으므로 이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만, 기본법의 특성상 그 내용이 일반적, 추상적인 원칙을 선언하는 것이 많아서 그 효과성을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둘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은 농업인과 농촌 주민 등의 복지 실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농업·농촌의 구성원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할 때 성별에 따른 고려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농업인과 농촌 주민 등의 삶 속에서 성평등이라는 가치가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현재 농업·농촌 분야의 각종 보조금이나 지원 사업을 함에 있어서 기본 단위인 농업경영체를 규율하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도 농업경영체의 경영주가 대부분 농가의 남성들이라는 점에서 성인지적 관점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농업·농촌 분야의 각종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선결조건이 되고 있는데, 농업경영체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경영주인 농업인과 경영주 외의 농업인의 인적사항 등 관련 정보를 기재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경영주는 대부분 농가의 남성이 되고, 경영주의 배우자인 여성은 다른 가족구성원과 함께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등록할 수 있을 뿐이다.

농가에서 부부가 함께 농사 일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주가 되는 것은 대부분 남성이어서 배우자인 여성은 그 역할에 걸맞는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공동경영주’ 제도가 2016년 도입되었다. 따라서, 공동경영주는 경영주의 배우자인 여성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과연 공동경영주에게도 경영주와 대등한 지위가 인정되고 있는지, 차별적 요소가 존재하지 않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앞에서 소개한 3개 법률-「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각각의 하위 법령들(이하 ‘분석 대상 법령’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성인지적 분석을 수행할 예정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여성 농업인 육성 정책의 근거인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은 여성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농업·농촌 분야에서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므로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만큼 본 연구에서 분석 대상 법령으로 삼지 않는 대신 각 법령의 분석에 여성농어업인의 실태 및 육성 정책을 그 근거 자료로 활용할 것이다.

제2장에서는 분석 대상 법령의 체계 및 주요 내용을 다루는데, 각 법령이 전체 농업·농촌 법체계에서 어떠한 지위와 중요성을 가지는지, 특히 여성농업인 정책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부각해서 서술할 것이다.

제3장에서는 분석 대상 법령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분석한 결과를 기술하고자 한다. 분석의 기준으로 제시한 성별 구분 또는 성별 고정관념, 성별 특성, 성별 균형 참여, 성별 분리 통계의 4가지로 나누어 각 법령 순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제4장에서는 분석 대상 법령에 대한 성인지 분석을 통해 도출한 개선과제로서 성인지적 관점에서 농업인 개념의 재검토, 정책 수립 및 시행에 성별 특성 반영, 정책 결정에서 성별 균형 참여의 효과성 제고, 성별 통계 생산 근거 마련을 제시하도록 한다.

제5장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여 농업·농촌 분야 법령 가운데 본 연구에서 살펴본 3개 법률과 하위 법령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분석한 결과 성평등한 농업·농촌 사회 구현을 위한 농업·농촌 법령의 개선 방향에 대한 제언으로 마무리하고자 한다.

## 2. 연구의 방법

농업·농촌 분야에서 여성 농업인의 법적 지위,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는 다수 이루어져 왔지만, 성인지적 관점에서 본격적으로 법령을 분석한 선행연구는 많지 않다.<sup>13)</sup> 2012년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제도가 시행된 이후로 농업·농촌 분야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는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다고 할 것이다.<sup>14)</sup> 따라서, 농업·농촌 분야에 대한 다양한 통계 자료, 5년마다 실시되는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자료 등을 활용하고, 농업·농촌 분야에서 수행되어 온 정책과 사업 등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등을 검토함으로써 농업·농촌 분야의 법제도에 있어서 성평등 실현을 위한 쟁점 등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분석 대상 법령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의 분석을 어떠한 기준에 의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성인지적 관점의 분석에 고유한 방법론이 있는 것은 아니며, 특정 개념이나 조치가 성별에 따라 차등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닌지, 성역할에 대한 고정 관념이 존재하지는 아닌지를 분석하는 것이므로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의 지침상 아래의 4가지 기준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즉, 법령에 성별 구분이나 성별 고정관념이 있는지 여부, 성별 특성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성별 균형 참여의 관점, 성별 분리 통계가 확보되어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살펴보되<sup>15)</sup>, 각각의 항목별 분석, 검토에는 각종 통

13) 여성농업인의 법적 지위 관련 논문으로는 김경미 외(2001), “여성농업인의 법적 지위 부여를 위한 시론적 접근”, 아시아여성연구, 40, 87-104; 김경미(2005), 여성농업인 법적 지위의 문제와 대안에 대한 고찰, 한국농어촌 사회연구소, 농민과 사회 통권 39호, 53-79; 오미란(2009), 여성농업인의 지위평등성 확보를 위한 법적제도 개선 방안, 젠더법학 제1권제1호, 한국젠더법학회 등이 대표적이다. 그리고 공동경영주 제도의 문제점을 고찰한 문현으로는 정은미 외(2020), 여성농업인 지위향상을 위한 농업경영체 제도 개선 연구, 농림축산식품부 연구용역 보고서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14) 2013년에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법령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박선영외, 2013) 보고서에서 농업 분야 법령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가 이루어진 바 있으나, 그 이후에는 주로 사업과 정책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정책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이은국 외, 2012), 2017년 6차 산업(농업융복합산업) 특정성별영향평가(정은미 외, 2017), 농촌종합개발 ODA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김은경 외, 2016))가 이루어졌다. 다만, 2017년 6차 산업(농업융복합산업) 특정성별영향평가(정은미 외, 2017) 보고서에는 관련 법령에 대한 검토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계 및 연구자료 등을 활용하여 성별에 따른 차등의 효과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고자 하겠다. 현행 성별영향평가법상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는 제·개정을 추진하는 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조례·규칙)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아직 법령의 시행 전에 그 효과를 예측해서 평가하는 것이므로 위의 4가지 기준이 이미 시행 중인 법령을 대상으로 하기에 적절한 기준인지에 대해서는 이론(異論)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분석 대상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진 바 없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위의 기준에 따라 법령 전체를 모니터링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제3장에서는 위의 네가지 기준에 따라 각 법령의 해당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개선과제를 도출할 것이다.

2021년 성별영향평가 지침의 성별영향평가 지표

성별영향평가항목	점검 포인트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1-1. 제·개정 법령의 적용 대상에 성별 구분 조항이 있습니까?
	1-2. 제·개정 법령에 사용된 용어 중 성별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이 있습니까?
	1-3. 법령상의 특정 조치에 성별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이 있습니까?
성별특성	2. 제·개정 법령안에 성별에 따른 신체적, 사회·문화적 차이 등을 고려하여 반영하였습니까?
성별 균형 참여	3-1. 위원회(당연직 제외) 등 구성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까?
	3-2. 위원회 구성 등을 위한 자격 요건이 특정 성에 불리하게 적용하고 있습니까?
성별통계	4. 제·개정 법령과 관련한 별지 서식, 실태조사 등에 성별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까?

출처 : 여성가족부, 2021년 성별영향평가 지침, 2021, 22쪽에서 일부 내용 발췌

15) 2021년 성별영향평가 지침의 4가지 기준에 따라 분석 대상 법령을 분석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제3장에서 후술한다.

본 연구는 문헌 연구를 중심으로 하면서 이 분야의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을 병행하였다. 연구 수행 중 이 분야의 선행연구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서면 자문 및 자문회의 개최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다. 특히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그리고 농촌진흥청에서 여성농업인 육성 정책 연구 및 성별영향평가를 다수 수행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여성정책팀 담당자들로부터 여성농업인의 정책 수요 및 관련 법제도의 개선과제 등에 관하여 유용한 자문을 얻었다. 그러나, 분석 대상 법령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의 분석, 검토를 함에 있어서 현장에 있는 여성농업인이나 여성농민단체 등의 의견을 직접 듣지 못하고 각종 토론회 자료, 통계 자료 등으로부터 간접적으로 의견을 수렴했다는 점은 연구방법상 한계로 볼 수 있다.

## 제2장

# 분석 대상 법령의 체계 및 주요 내용

제1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절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절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장

# 분석 대상 법령의 체계 및 주요 내용

### 제1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1. 입법 목적

개방·경쟁 시대에 대응하여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여 농업을 국민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국토환경보전 등에 이바지하는 국가기간산업으로 발전시키며, 농업인을 다른 산업종사자와 균형된 소득을 실현하는 경제주체로 성장시켜 나가는 한편, 농촌을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보존하는 풍요롭고 쾌적한 산업·생활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필요한 농업·농촌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함으로써 모든 농업·농촌관계법의 기본이 되도록 함과 아울러 이 법과 중복이 되거나 실효성이 없는 농업·농촌 관계법률을 정비하려는 목적으로 1999년 「농업·농촌 기본법」이 제정되었다.<sup>16)</sup>

#### 2. 연혁

현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의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1967년에 제정된 「농업기본법」을 들 수 있다. 농업 관련 제도 정비에 착수한 구미 국가들의 농업기본법과 일본의 농업기본법 제정에 자극을 받아 농업경영의 근대화, 식량생산의 증가, 가격 및 유

16)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농업·농촌 기본법」(법률 제5758호, 1999. 2. 5, 제정) 제정 이유를 검색한 결과이다.

통구조 개선, 농가소득 증진, 소득균형 실현을 목적으로 제정된 「농업기본법」은 농지에 관한 정책적 규정과 유통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sup>17)</sup> 그러다가 농산물의 시장개방과 농정의 국제화라는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농업·농촌의 비전과 중장기 정책방향의 정립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라 1999년 「농업·농촌기본법」이 제정되었다.<sup>18)</sup> 이를 통해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이 법은 1999년 제정된 이후 총 30차례 개정(타법개정 포함)되었는데, 주요한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농업·농촌기본법」의 제정 이후 농업·농촌과 국민의 식생활 형태가 크게 변화하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다자간무역협상 및 세계 여러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추진되고 있어 농업분야의 경쟁이 심화되는 여건 속에서 농업경영의 전문화, 농업인의 소득안정,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식품산업을 포함한 농업 관련 산업의 육성과 농촌주민의 복지혜택 향상 등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에 따라 법률 명칭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으로 변경하고, 농정(農政)의 기본방향과 식품산업 및 농업자재산업의 육성시책 등을 규정하기 위해 2007년 전부 개정이 이루어졌다.<sup>19)</sup> 여기에서 식품산업정책의 방향 제시, 지역농업의 발전과 농촌주민의 복지 증진 및 농촌지역산업의 진흥,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의 수립, 여성농업인의 권익 향상, 통일대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과 국제협력, 농업기술·연구의 진흥 및 지식재산권 등의 보호, 농업인 등 소득 및 경영안정의 지원, 농업경영정보의 등록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sup>20)</sup> 특히 여성농업인의 권익 향상과 관련하여 종래 제27조(여성농업인의 육성)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정책을 수립·시행할 때에 여성농업인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여성농업인의 지위

17) 사동천, 농업식품기본법상 공익적 가치의 반영, 홍익법학 제20권제3호,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427쪽.

18) 사동천, 앞의 논문, 427쪽.

19)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법률 제8749호, 2007. 12. 21, 전부개정) 개정 이유를 검색한 결과이다.

20)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법률 제8749호, 2007. 12. 21, 전부개정) 개정의 주요 내용을 검색한 결과이다.

향상과 전문인력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는 기본방향만 규정되어 있다가, 농업경영주가 아니지만 사실상 농업경영에 참여하는 여성농업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적절히 보호해줄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는 현실을 반영하여 같은 조 제2항에 여성농업인이 농업경영에 참여하거나 기여한 정도에 상응한 사회·경제적 지위를 인정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다.<sup>21)</sup>

농업·농촌 기본법 [법률 제5758호, 1999. 2. 5., 제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법률 제8749호, 2007. 12. 21., 전부개정]
제14조 (여성농업인의 육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정책의 수립·시행에 있어서 여성농업인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과 전문인력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7조 (여성농업인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정책을 수립·시행할 때에 여성농업인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과 전문인력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여성농업인이 농업경영 등에 참여하거나 기여한 정도에 상응하는 사회·경제적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009년에는 농업과 수산조직의 통합이라는 정부조직의 개편 취지에 맞게 어업·어업인·수산자원 및 어장 등에 대한 기본이념과 지원내용 등을 이 법에 통합하여 농림수산 분야의 기본법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법률 명칭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변경하고, 개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수산 관련 규정을 이 법의 농업·농촌 관련 조문에 통합하여 규정하며, 어선원의 생활안정과 농수산물의 생산 이후 관리기술의 개발과 연구를 위한 지원정책을 수립하는 내용의 개정이 이루어졌다.<sup>22)</sup> 그러다가 2015년 6월 22일에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의 제정에 따라 이 법은 다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제명이 변경되었다.

21)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법률 제8749호, 2007. 12. 21, 전부개정) 개정의 주요 내용을 검색한 결과이다.

22)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법률 제9717호, 2009. 5. 27, 전부개정)의 개정 이유를 검색한 결과이다.

### 3. 주요 내용

이 법은 농업·농촌의 지속적 발전, 농산물 및 식품공급,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국가의 정책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규정들은 추상적·일반적 성격을 가질 수 밖에 없고, 농업·농촌 관련 법제의 상위법 내지 모법으로서의 기능을 한다.<sup>23)</sup> 이 법은 제2조에서 농업·농촌의 기본이념으로서 i)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국토환경보전에 이바지하는 등 경제적·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간 산업으로서 국민의 경제·사회·문화발전의 기반이 되도록 하고, ii)농업인은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다른 산업종사자와 균형된 소득을 실현하는 경제주체로 성장하여 나가도록 하며, iii)농촌은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보존하고 국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산업·생활공간으로 발전시켜 이를 미래세대에 승계되도록 한다는 농업·농촌의 기본이념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농업인, 소비자 등에게 미래의 농정추진방향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한다.<sup>24)</sup>

이 법은 총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있는데, 제1장 총칙, 제2장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의 기본방향, 제3장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발전계획 수립·시행,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의 공급, 농업 인력의 육성, 농지의 이용 및 보전, 농업생산구조의 고도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강화, 농촌지역 발전과 삶의 질 향상, 통일 대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방향을 규정하고 제4장은 보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기본원칙 및 방향을 주로 규정한 것으로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의 세부적인 내용은 개별 법제를 통해서 구체화되고 집행된다.<sup>25)</sup>

23) 사동천, 개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관한 고찰, 법학논총 제15권 제2호,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08, 466쪽.

24) 사동천, 앞의 논문, 466쪽.

25) 예컨대 농지에 관해서는 「농지법」이 제정되어 있고, 여성농업인 육성에 관해서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 후계농어업인 육성에 관해서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이, 귀농업인 육성에 관해서는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관해서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농업경영체 경영정보 등록에 관해서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이 제정되어 있다.

이 법은 제3조제2호에서 ‘농업인’을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같은 조 제3호의 ‘농업경영체’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개념을 준용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농업경영체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의미하므로 농업경영체의 정의는 다시 이 법의 농업인 정의로 귀결된다. 즉, 이법의 ‘농업인’ 정의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농어업경영체’의 정의는 상호 연관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것은 후술하는 여성농업인의 법적 지위 향상의 측면에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sup>26)</sup>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의 구성

[시행 2020. 12. 8.] [법률 제17618호, 2020. 12. 8., 타법개정]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 제2조(기본이념)
- 제3조(정의)
-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소비자 등의 책임)
- 제4조의2(농업인의 날)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2장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의 기본방향 <개정 2015. 6. 22.>

- 제6조(정책 수립·시행의 기본원칙)
- 제7조(농산물과 식품의 안정적 공급)
- 제8조(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 제9조(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 제10조(지역농업의 발전과 농촌주민의 복지증진)
- 제11조(농업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육성)
- 제11조의2(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설립)
- 제12조(통일 대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
- 제13조(통상 및 국제협력)

#### 제3장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의 수립·시행 <개정 2015. 6. 22.>

- 제1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시행 <개정 2015. 6. 22.>
- 제14조(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 제15조(정책심의회)

- 제16조(기본계획의 추진)
- 제17조(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 제18조(관련 행정조직의 정비)
- 제2절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의 안정적 공급 등 <개정 2015. 6. 22., 2017. 3. 21.>
- 제19조(생산단계의 농산물 안전성 관리)
- 제20조(농산물과 식품의 품질관리 등)
- 제21조(식품산업의 육성)
- 제22조(전통 식생활문화의 계승·발전)
- 제23조(식량과 주요 식품의 안정적 공급)
- 제23조의2(농산물 및 식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 등)
- 제3절 농업인력의 육성 등 <개정 2015. 6. 22.>
- 제24조(가족농가의 경영안정과 농업 종사자의 육성)
- 제25조(후계농업경영인의 육성)
- 제26조(전업농업인의 육성)
- 제27조(여성농업인의 육성)
- 제28조(농업 관련 조합법인 및 회사법인의 육성)
- 제29조(벤처농업 등의 육성)
- 제29조의2(귀농업인의 육성)
- 제4절 농지의 이용 및 보전 <개정 2015. 6. 22.>
- 제30조(농지에 관한 기본이념)
- 제31조(농지의 소유 및 이용)
- 제32조(농지의 보전)
- 제5절 농업생산구조의 고도화 <개정 2015. 6. 22.>
- 제33조(농업 생산기반의 정비)
- 제34조(농업투입재 산업의 육성 및 기계화·시설현대화 촉진)
- 제35조(농업 및 식품 관련 기술·연구 등의 진흥)
- 제36조(농업 및 식품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 추진)
- 제36조의2(정보통신기술 융복합 기반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
- 제37조(지식재산권 등의 보호)
- 제38조(친환경농업 등의 촉진)
- 제39조(농업경영체의 경영안정 및 구조개선 등의 지원)
- 제40조(농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
- 제41조(농업 재해 등에 대한 시책)
- 제42조(농산물과 식품의 수급 및 가격의 안정)
- 제43조(농산물과 식품의 유통개선)

- 제43조의2(치유농업의 진흥)
- 제6절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개정 2015. 6. 22.>
- 제44조(농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 보전)
- 제45조(전통 농경 문화의 계승 등)
- 제46조(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연구·홍보 등)
- 제47조(지구온난화 방지 등)
- 제47조의2(기후변화에 따른 농업·농촌 영향 및 취약성 평가)
- 제7절 농촌지역의 발전 및 삶의 질 향상 <개정 2015. 6. 22.>
- 제48조(농촌지역 발전시책의 수립)
- 제49조(지역 간의 소득 균형)
- 제49조의2(조건불리지역의 지원)
- 제50조(농촌지역산업의 진흥 및 개발)
- 제51조(도시와 농촌 간의 교류 활성화 등)
- 제52조(농업 및 농촌지역의 정보화 촉진)
- 제53조(농촌지역 교육여건의 개선)
- 제54조(농촌주민의 복지증진)
- 제8절 통일 대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과 국제협력 <개정 2015. 6. 22.>
- 제55조(북한의 농업 생산체제의 조사·연구 등)
- 제56조(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통상정책 및 보완대책)
- 제57조(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분야의 국제협력)
- 제58조(농업 부문의 해외투자 지원)
- 제59조(농산물 및 식품의 수출 진흥)
- 제60조(농산물 및 식품의 수입 관리)
- 제4장 보칙**
- 제61조(준농촌에 대한 지원)
- 제62조(조세의 감면)
- 제63조(농업 정책자금의 지원·관리)
- 제63조의2(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설립)
- 제64조(별칭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2절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 1. 입법 목적

이 법은 도시지역과 농산어촌지역의 소득수준 및 생활수준의 격차가 심화되는 가운데 자유무역협정(FTA)의 확산 및 세계무역기구 농산물협상의 진전으로 농림어업인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 농림어업인의 복지증진, 농산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에 관한 종합적·체계적인 지원체제를 마련함으로써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2004년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명칭으로 제정되었다.<sup>27)</sup> 제정 당시 법 제1조는 “이 법은 농업·농촌기본법, 산림기본법 및 해양수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농림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산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농산어촌의 종합적·체계적인 개발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림어업인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농업·농촌기본법」(현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산림기본법」, 「해양수산업발전기본법」을 근간으로 하면서 농어업인 등의 복지 증진과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농어촌 개발 촉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2. 연혁

이 법은 2004년 제정된 이후 총 37차례 개정(타법개정 포함)되었는데, 주요한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7)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7179호, 2004. 3. 5. 제정)의 제정 이유를 검색한 결과이다.

2004년 제정된 법률에서는 제18조(농산어촌 여성의 복지증진)에 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산어촌 여성의 모성보호 및 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바 있다. 농산어촌인구의 여성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여성 농어업인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 양육환경이 취약하여 안정적인 영농 활동에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2007년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농산어촌여성의 ‘보육여건 개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추가되었다.<sup>28)</sup>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7179호, 2004. 3. 5, 제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8501호, 2007. 7. 13, 일부개정]
제18조 (농산어촌 여성의 복지증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산어촌 여성의 모성보호 및 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18조(농산어촌 여성의 복지증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산어촌 여성의 모성보호·보육여건 개선 및 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3>

2011년에는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관련 정책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정하도록 하였으며, 고령 농어업인에 대한 영양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농어촌에서 육성하는 산업을 ‘농어촌산업’으로 확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이 이루어졌다.<sup>29)</sup> 같은 해에는 국가 차원의 중장기 계획 및 소관 중요정책이 농어촌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농어촌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는 전문지원기관의 지정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영유아 보육비 지원 등 농어업인 복지사업예산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정보시스템을 부처 간 상호 연계하여 활용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sup>30)</sup>

28)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8501호, 2007. 7. 13, 일부개정)의 개정 이유를 검색한 결과이다.

29)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0386호, 2010. 7. 23, 일부개정)의 개정 이유를 검색한 결과이다.

30)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0936호,

2013년에는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과 실태조사에 사회안전망 확충, 고령 농어업인에 대한 소득안정화 및 작업환경 개선 사항을 추가하였고, 농어업인의 건강보호와 쾌적한 농어업 작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작업자 건강위해 요소를 측정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매년 농어업인의 질환 현황을 조사하고 건강검진을 지원하며, 농어촌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지원, 고령 농어업인의 소득안정화를 위한 지원, 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함께 학력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농어업인 등의 평생교육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이 이루어졌다.<sup>31)</sup> 2017년에는 영양취약계층 농어업인등의 영양개선을 위하여 급식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책무 및 지원을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할 것을 법률로 명시하는 개정이 이루어졌다.<sup>32)</sup>

2018년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 유치원 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현행법 제3조의 ‘농어촌학교’ 정의에 유치원을 포함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기준에 미달하는 농어업인에게 교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는 등 농어촌 교육에 관한 개정<sup>33)</sup>이 이루어졌으며, 2020년 일부 개정을 통해서 도심지역에 비해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농어촌의 의료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수립시 농어촌의 의료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게 되었다.<sup>34)</sup>

2011. 7. 25, 일부개정)의 개정 이유를 검색한 결과이다.

31)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1875호, 2013. 6. 12, 일부개정)의 개정 이유를 검색한 결과이다.

32)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4981호, 2017. 10. 31, 일부개정)의 개정 이유를 검색한 결과이다.

33)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6121호, 2018. 12. 31, 일부개정)의 개정 이유를 검색한 결과이다.

34)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6967호, 2020. 2. 11, 일부개정)의 개정 이유를 검색한 결과이다.

### 3. 주요 내용

이 법은 총 6개의 장-제1장 총칙, 제2장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등, 제3장 농어업인들의 복지증진, 제4장 농어촌 교육여건의 개선, 제5장 농어촌 지역개발, 제6장 보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총칙에서는 제2조에서 농어촌과 도시지역 간에 생활 격차를 해소하고, 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농어촌 주민이 도시지역 주민과 균등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농어촌이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동법의 기본이념임을 밝히고 있으며, 제3조에서는 농어촌, 농어업, 농어업인들의 개념에 대해 정의하고 있다. 이 법에서는 조문별로 ‘농어업인’이 규정된 경우도 있고 ‘농어업인등’이 규정된 경우도 있다. 이 법 제3조제3호에 따르면 “농어업인등”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촌 주민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과 어촌주민을 말한다”고 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상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농업인 외에도 농촌 주민을 정책 대상으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2장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과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실태조사, 주요 사항의 의사결정을 위한 위원회 구성 등이 규정되어 있다.

제3장 농어업인들의 복지증진에서는 농어업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 마련, 농어업인에게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질환의 예방·치료 등 지원, 업무상 재해에 대한 지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영유아보육비 지원을 규정하고, 농어촌 여성의 복지증진, 농어촌 다문화가족의 복지증진, 고령농어업인의 생활안정 지원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4장은 농어촌 주민의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에 관해 농어촌 학교나 농어촌 유치원 등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5장은 농어촌 주민의 기초생활 여건 보장을 위한 농어촌 지역의 환경 개선, 농어촌 산업 육성, 농어촌 문화예술 진흥, 도농간의 교류 촉진 등을 규정하고 있다.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의 구성

[시행 2020. 12. 8.] [법률 제17618호, 2020. 12. 8., 타법개정]

**제1장 총칙** <개정 2010. 7. 23.>

제1조(목적)

제2조(기본이념)

제3조(정의)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2장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등** <개정 2010. 7. 23.>

제5조(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제6조의2(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통보 등)

제7조(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의 수립)

제8조(농어업인등에 대한 복지실태 등 조사)

제9조(기본계획 등의 평가)

제10조(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제10조의2(시·도 및 시·군·구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제11조(재정 지원)

**제3장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개정 2010. 7. 23.>

제12조(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제13조(농어업인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제14조(농어업인 질환의 예방·치료 등 지원)

제15조(업무상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제15조의2(농어업인 질환의 예방 등을 위한 시설의 지원)

제16조(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제17조(농어업인의 영유아 보육비 지원)

제17조의2(농어촌 지역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

제18조(농어촌 여성의 복지증진)

제18조의2(농어촌 다문화가족의 복지증진 지원)

제19조(고령 농어업인의 생활안정 지원 등)

제19조의2(농산물대금 선지급제의 실시)

제19조의3(고령 등 영양취약계층 농어업인등의 영양개선)

제19조의4(농어업인등의 일자리 창출 기여 등 단체에 대한 지원)

제19조의5(자동차손해배상에서 농어업인에 대한 지급액의 보장 등)

**제4장 농어촌 교육여건의 개선** <개정 2010. 7. 23.>

제20조(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의 책무)

제21조(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 보장 등)

제22조(농어촌 유치원 유아의 교육·보호)

제23조(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 지원)

제24조(농업·수산업 기초인력의 양성)

제25조(농어촌학교 교직원의 확보·배치)

제26조(농어촌학교 교직원의 우대)

제27조(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

제28조(농어촌학교의 시설·설비 등 지원)

제28조의2(농어업인등의 평생교육 지원)

### 제5장 농어촌 지역개발 <개정 2010. 7. 23.>

제29조(농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

제30조(농어촌 경관의 보전)

제30조의2(국가중요농업유산의 보전·활용)

제30조의3(국가중요어업유산의 보전·활용)

제31조(농어촌산업 육성)

제32조(농어촌의 정보화 촉진)

제32조의2(농업·농촌공간정보 등의 종합정보체계 구축 등)

제33조(농어촌의 문화예술 진흥)

제34조(농어촌 문화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제35조(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확대)

제35조의2(농어촌지역 교통편의 증진 지원)

제35조의3(내항 화물운송사업 운임 및 요금 지원)

제36조(농어촌 투자유치 활성화)

제37조(도·농교류센터의 설치·운영)

제38조(농어촌 지역종합개발계획의 수립·시행)

제38조의2(농어촌 지역발전협의회 등의 구성·운영)

제39조(농어촌 거점지역의 육성)

제40조(조건불리지역에 대한 특별지원)

### 제6장 보칙 <개정 2010. 7. 23.>

제41조(농어촌특별세 재원의 우선 지원)

제42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국회 보고 등)

제43조(준농어촌에 대한 지원)

제44조(농어촌서비스기준의 제정·운용 등)

제45조(농어촌에 대한 영향평가)

제46조(전문지원기관의 지정 및 지원)

제47조(자료제공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 제3절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1. 입법 목적

이 법은 자유무역협정 등 경제개방의 확대와 농어업인 고령화 등에 대응하여 농어업, 농어촌의 지속적인 발전과 농어업 경영주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어업경영체인 농어업인, 영농·영어조합법인 및 농어업회사법인에 대한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소득안정 직접지불제의 도입 등 맞춤형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농어업 후계인력을 양성하며, 농어업 경영의 규모화 및 농어업법인의 설립을 지원하는 한편, 농어업회계기준 마련 및 선도적 농어업 경영모델의 확산 등 농어업의 경영혁신 기반을 구축하려는 목적으로 2009년 4월 1일 제정되었다.<sup>35)</sup>

#### 2. 연혁

이 법은 2009년 제정된 이후로 총 17차례 개정(타법 개정 포함)되었으며, 주요한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0년에는 지방자치단체에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취소, 융자금의 사용, 사업추진 현황 및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심사위원회가 설치되었고,<sup>36)</sup> 2015년에는 농어업경영체가 보조금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등기하는 경우 해당 재산이 보조금의 지원을 통하여 형성되었다는 사실을 병기하는 부기등기(附記登記) 제도를 도입하여 보조사업의 폐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에 대한 기획, 관리, 평가 등을 전담할 전담기관 지정을 통하여 지원사업의 투자효율을 제고하는 한편, 농어업법인에

35)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9620호, 2009. 4. 1. 제정)의 제정 이유를 검색한 결과이다.

36)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9956호, 2010. 1. 25. 일부개정)의 개정 이유를 검색한 결과이다.

대한 실태조사 및 행정조치 근거의 마련하고, 농어업법인의 사업범위 확장 및 합병 근거 마련 등을 통하여 농어업법인의 효율적인 관리와 규모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부 개정이 이루어졌다.<sup>37)</sup>

최근 농어업에 종사하는 여성 비중이 커지고 있고, 국제결혼을 통해 형성된 다문화가족이 고령화된 농어촌 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만큼 여성 및 다문화가족 구성원을 후계농어업경영인 선정 시 우대할 필요가 있음에 따라 시·도지사가 후계농어업경영인을 선정하는 경우 농어촌에 거주하는 여성과 다문화가족 구성원을 우대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것으로 2016년 일부 개정이 이루어졌다.<sup>38)</sup> 그러나 해당 규정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0년 제정됨에 따라 그 법으로 이관되었다.

다음해에는 농어업경영체가 등록한 농어업경영정보를 직권으로 정정하거나 말소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동농업경영체에 대하여 공동경영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농가단위 소득안정직불제도의 도입 중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생산비용 절감 및 농가 소득향상을 위한 공동경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농업경영체를 지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일부 개정이 이루어졌다.<sup>39)</sup>

### 3. 주요 내용

이 법은 총 8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2017년 3월 직접지불금을 규정했던 제4장이 삭제되고 제6장의 2 공동농업경영 활성화가 추가됨으로써 그대로 8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가장 핵심인 규정은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도록 하는 제2장과 농어업법인 설립 및 지원을 규정한 제5장이라고 할 수 있다.

37)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2961호, 2015. 1. 6, 일부개정)의 개정 이유를 검색한 결과이다.

38)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4208호, 2016. 5. 29, 일부개정)의 개정 이유를 검색한 결과이다.

39)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4646호, 2017. 3. 21, 일부개정)의 개정 이유를 검색한 결과이다.

이 법 제5조제1항에 따르면 농어업·농어촌에 관련된 용자·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어업경영체는 일정한 사항(농어업경영정보)을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을 위해서는 농어업경영체는 일정한 서식에 따라 작성한 문서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나 읍면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농어업경영체는 농업경영체와 어업경영체로서, 농업경영체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의미한다. 농업법인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 농업인도 농업경영체로 등록할 수 있으나, 이 때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에 해당해야 한다. 이 때 농업경영정보 등록을 위한 서식(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보면, 농업경영체는 ‘경영주’와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나누어지며, 경영주 외 농업인이 경영주의 배우자인 경우에는 공동경영주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농업경영체 등록을 통한 혜택은 경영주에게 대부분 돌아가게 되고, 공동경영주로 등록하여도 경영주와 대등한 지위 및 혜택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의 요구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제5장에서는 농어업경영체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기술개발, 경영규모의 확대 또는 농어업기계화 및 시설장비 현대화, 경영정보화, 전문인력의 확보 및 인수합병 등을 위하여 자금 및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3년마다 농어업법인의 운영실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구성  
[시행 2020. 8. 28.] [법률 제16568호, 2019. 8. 27.,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2장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제5조(등록정보의 확인 등)

제6조(등록정보의 수정등 요청)

제6조의2(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

제6조의3(이의신청)

제7조(농어업경영정보의 보호)

제7조의2(부기등기 등)

제8조(자금 지원 등의 제한)

### 제3장 후계농어업인력의 양성과 경영 규모화

제9조 삭제

제10조 삭제

제11조(농어업경영의 규모화)

### 제4장 삭제 <2017. 3. 21.>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 제5장 농어업법인의 설립 및 지원 등

제16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

제17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 등)

제18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조직변경)

제18조의2(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합병·분할)

제19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 등)

제20조(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의 지원)

제20조의2(실태조사)

제20조의3(해산명령)

### 제6장 농어업경영혁신 기반 구축

제21조(농어업경영체의 회계)

제22조(농어업교육 계획의 수립 등)

제23조(농어업인단체 등의 교육운영 지원)

제24조(교육기관 평가 등)

제25조(통합농어업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제26조(선도적 농어업경영모델의 확산)

제27조(농어업인재개발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27조의2(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 평가 및 성과관리 전담기관 지정 등)

### 제6장의2 공동농어업경영 활성화 <신설 2017. 3. 21.>

제27조의3(공동농업경영체의 지정 등)  
제27조의4(공동농업경영체의 정보등록 등)  
제27조의5(공동농업경영체의 지정취소 등)  
제27조의6(공동농업경영체의 사후관리)

#### **제7장 보칙**

제28조(청문)  
제2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3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제8장 벌칙**

제31조(벌칙)  
제32조(양벌규정)  
제33조(과태료)

## 제3장

# 분석 대상 법령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

제1절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제2절 성별 특성

제3절 성별 균형 참여

제4절 성별 통계



## 제3장

# 분석 대상 법령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

제1장의 연구의 방법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분석 대상 법령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을 위해서 2021년 성별영향평가 지침의 4가지 평가 항목에 따라 검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성인지적 분석을 위한 기준별 검토사항

구분	검토사항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성별 구분 조항이 있는지, 법령상 용어에 성별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이 있는지 확인</li><li>- 그러한 성별 구분이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법령상 조치가 성별 고정관념에 기인한 것인지 여부 검토</li></ul>
성별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법령상 조치가 성별에 따른 신체적, 사회·문화적 차이 등을 고려하여 반영하였는지 확인</li><li>- 그렇지 않다면 성별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검토</li></ul>
성별 균형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위원회 규정에 성별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는지 확인</li><li>- 위원회 구성을 위한 자격 요건에 특정 성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부분은 없는지 검토</li></ul>
성별 통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법령상 서식이나 실태조사 규정에 성별을 명시하고 있는지 확인</li></ul>

출처: 여성가족부 2021년 성별영향평가지침의 성별영향평가지표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 제1절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이라는 기준은 법령에 성별을 구분한 조항이 존재하는지, 법령상 용어에 성별에 따른 고정관념을 반영한 표현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러한 성별 구분이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인지를 검토하고, 법령상 조치에 성별 고정관념이 표현되어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다.<sup>40)</sup> 성별 고정관념은 우리 사회에서 오랫동안 근로나 생계유지, 출산 및 부양, 돌봄 등의 영역은 특정 성의 몫이라고 인식함으로써 성별 역할이 고착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이를 탈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이하에서는 분석 대상 법령에서 성별을 구분한 조항 또는 성별에 따른 고정관념을 반영한 표현이 존재하는지 여부, 그러한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이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인지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1) 여성농업인의 육성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7조(여성농업인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정책을 세우고 시행할 때에 여성농업인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과 전문인력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여성농업인이 농업경영 등에 참여하거나 기여한 정도에 상응하는 사회·경제적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농업식품기본법’이라 한다)에서 성별 구분 규정은 제27조(여성농업인의 육성)을 들 수 있다. 이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업인 지위향상과 전문인력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의무를 선언하고, 여성농업인의 참여 및 기여도에 따라 사회·경제적 지위를 인정하기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 근거한 여성농업인 육성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2001년 「여성농업인 육성법」이 별도로 제정되어 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40) 여성가족부, 2021년 성별영향평가 지침, 2021, 22쪽.

농업식품기본법에는 여성농업인에 대한 정의가 별도로 존재하지 아니하는데, 제27조에서는 여성농업인을 규정하고 있어서 여성농업인의 개념이 문제된다. 현재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에 의하면 “여성농업인이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여성농업인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어서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에 해당하는 여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p>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p>	<p>제3조(농업인의 기준) ① 법 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li> <li>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li> <li>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li> <li>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 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li> <li>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 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li> </ol>

농업·농촌 분야에서 여성의 참여와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가 중심의 가부장적인 문화와 남성 중심의 가족 질서 하에서 여성들은 부차적, 보조적 존재로 인식되어 왔고, 농사일 외에도 가사 노동과 돌봄까지 도맡아 하면서 그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왔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이유에서 농업·농촌에서 여성을 육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어서 ‘여성농업인’을 정책 대상으로 삼아 각종 육성 및 지원 정책을 수립, 시행한 것이다. 따라서 여성농업인에 대한 육성 조항을 별도로 두는 것은 농업·농촌에서의 성평등 실현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여성농업인을 위와 같이 정의함으로써 기본법상의 농업인의 자격 기준을 적용하게 될 때,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여성들은 정책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현행 농업인 기준이 여성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sup>41)</sup>

이러한 점에서 농업식품기본법 제3조제2호와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호의 농업인의 정의가 여성에게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관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 농업식품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호에 의하면 농업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 다섯 가지 기준 중 하나- ①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자, ②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③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④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 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자, ⑤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자-를 충족해야 한다.

이러한 농업인 기준에 대해서는 여성의 경우 농지를 소유하는 비율이 낮아 농지를 소유하지 않고 경작을 하는 사람은 농업인에서 제외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판매액 100만원 기준(과거 기준)이 높거나, 주로 남편 명의로 거래를 하는 관행에 따라 판매액을 증빙하기 어렵다는 점 등으로 영세농이 농업인에서 배제된다는 점, 90일 이상

41) 현재 법령에서 여성농업인 외에 ‘농촌 여성’ 이 쓰이는 예가 있는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농촌여성의 복지 증진’이라는 조문이 존재하고, 조항 곳곳에서 ‘농업인 등’이라고 하여 농업인과 농촌주민을 포함하는 용어를 쓰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점에서 ‘농업인’이라는 용어는 일정한 자격을 충족한 사람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러한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농업인 대상 정책에서 소외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농업에 종사요건의 경우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한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거나(김경미 외(2005))<sup>42)</sup>, 현 농업인 정의 규정이 지닌 한계 때문에 여성농업인이 농업인으로서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농지소유에 기반한 경작인정 제도 개선, 농업 실질 기여자 인정방안 마련 및 다양한 시각에서 농업인 역할을 해석할 것을 제안(이진영 외(2006))<sup>43)</sup>한 선행연구도 존재한다. 이러한 선행연구는 2008년 6월 22일 전부개정 전의 규정<sup>44)</sup>을 대상으로 한 것이긴 하나 근본적인 문제의식은 현재도 유효하다고 본다.

그런데, 현재 농업에 종사하는 전체 여성의 경작 면적이나 농지 소유 면적, 농산물 연간 판매액, 농업종사 기간 등에 대한 통계가 존재하지 않아 동 규정의 효과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따라 5년마다 실시되는 실태조사는 이미 농업인의 자격에 해당하는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sup>45)</sup> 농업에 종사하는 전체 여성의 실태를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농업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농업인확인서 발급 규정에 따라 일정한 서류를 갖추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청을 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나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을 입증하는 영수증이 있어도 농지 원부를 제시해야 한다거나, 농업종사기간을 입증하기에 불편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어서 여성들이 농업인 확인을 받기에는 제도적인 어려움이 존재한다고 한다.<sup>46)</sup>

42) 김경미 외, 여성농업인에 대한 정책적 지원 강화 방안: 여성농업인 육성 5개년계획 평가와 제언을 중심으로, 한국농촌지도학회지, 제12권 제1호, 2005 - 임소영, 농가 및 농업인 정의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0, 11쪽에서 재인용

43) 이진영 외, 농업인의 지위인정 범위와 관련 제도 정비방안 연구, 농촌진흥청, 2006- 임소영, 농가 및 농업인 정의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0, 12쪽에서 재인용

44) 2008년 6월 22일 전부개정 전에 농업인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았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8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농업인이 동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 또는 임대받은 농어촌주택등에 부속된 농지를 제외한다)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3.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45) 안 석 외, 2018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농림축산식품부 연구용역 보고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9, 9쪽.

46) 이수미, 여성농민 성불평등 실태조사를 통해 본 여성농민의 현실과 성평등한 농촌, 성평등한 농촌! 여성 농민 법적 지위 보장을 위한 여성농민 정책대토론회 자료집, 2020. 8. 19, 72쪽.

###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시행 2019. 2. 8.]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9-9호, 2019. 2. 8., 일부개정][시행 2020. 8. 28.]

제4조(농업인 확인 기준) 이 고시에 따라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농업인 확인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의 농업인 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한 경우
  -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해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
  - 나. 농지법 제50조에 따라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별표 1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농지원부등본을 교부받아 제출한 사람
  - 다. 농지법 제20조에 따라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대한 대리경작자지정 통지서를 제출한 사람
  - 라. 농지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대한 임대차계약 또는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를 제출한 사람
  - 마. 나목과 다목, 나목과 라목, 나목·다목·라목 및 다목과 라목에 따른 각 농지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이면서 관련 서류를 제출한 사람
  - 바. (삭제)
2.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의 농업인 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한 경우
  - 가. 다음의 자와 연간 120만원 이상의 농산물(법 시행령 제5조의 농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를 제출하거나 농산물 출하·판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수증 등)를 제출한 사람
    -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중도매인·매매참가인·산지유통인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 (2)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제24조 및 제26조에 따라 영업을 허가받거나 신고·승계한 자
    - (3) 「축산법」 제34조에 따라 개설된 가축시장을 통하여 가축을 구매하는 자
    - (4)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호의 생산자단체(이 고시에서 생산자단체는 이를 말한다)
    - (5)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영업을 개시한 대규모점포등의 개설자
    - (6)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 나.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에서 육림업(자연휴양림·자연수목원의 조성·관리·운영을 포함한다),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을 다음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따라 경영하는 사람
    - (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수실류(밤, 잣 제외)·약초류·약용류·수목부산물류·관상산림식물류(분재 제외)·그 밖의 임산물 : 1천제곱미터 이상
    - (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버섯류·산나물류·분재 : 300제곱미터 이상

- (3) 밤나무 : 5천제곱미터 이상
- (4) 잣나무 : 1만제곱미터 이상
- (5) 표고자목 : 20세제곱미터 이상
- (6) 산림용 종자·묘목생산업자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자
- (7) (1)에서 (6)까지 이외 목본 및 초본식물 : 3만제곱미터 이상

다. 기타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한 사람

- (1)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비닐하우스의 시설을 설치하여 식량·채소·과실·화훼·특용·약용작물, 버섯, 양잠 및 종자·묘목(임업용은 제외한다)을 재배하는 사람
- (2) 농지에 660제곱미터 면적 이상의 채소·과실·화훼작물(임업용은 제외한다)을 재배하는 사람
- (3) 33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에 규정된 축사 관련 부속시설을 설치하여 별표 2 기준 이상의 가축규모나 별표 3 기준 이상의 가축사육시설면적에 별표 2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
- (4)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종축업, 부화업이나 가축사육업의 허가받은 사람 또는 등록된 사람
- (5) 농지에 1천제곱미터 이상의 조경수를 식재(조경목적 제외) 생산하는 사람
- (6)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곤충의 사육 또는 생산에 대해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로서 별표 4의 사육규모 이상으로 대상곤충을 사육하는 사람
- (7) (삭제)

3.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의 농업인 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한 경우

가. 가족원인 농업종사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

- (1) 제1호에서 제2호까지의 농업인 충족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농업인(이하 "농업경영주"라 한다)의 가족원으로서 주민등록표에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함께 등록된 사람(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세대를 달리하는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배우자는 예외로 하고, 농업인과 혼인한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가 농업인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와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동일한 사람)
- (2) (1)의 농업경영주의 주소가 법 제3조제5호의 농촌이나 법 제61조의 준농촌에 위치하고 농업경영주의 가족원인 농업종사자 또는 농촌(준농촌)이 아닌 지역에 위치하고 농업경영주의 가족원인 농업종사자로서 별지 제7호 서식으로 영농사실을 확인받은 사람
- (3) 「국민연금법」 제8조의 사업장가입자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의 직장가입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단, 18세 미만 제외)

나. 가족원이 아닌 농업종사자의 경우에는 농업경영주와 1년 중 90일 이상 농업경영이나 농지경작활동의 고용인으로 종사한다는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를 제출한 사람

다. (삭제)

4.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농업인 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한 경우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업 생산 및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고용된 사람이 1년 이상(계속 종사를 말한다)의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를 제출한 사람  
 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업 생산 및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활동에 고용된 사람이 1년 이상(계속 종사를 말한다)의 고용  
 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를 제출한 사람. 다만, 법인의 대표와 등기이사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 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 (1) 농어촌 여성의 복지 증진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8조(농어촌 여성의 복지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여성의 모성보호, 보육여건  
 개선 및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 특별법」(이하 ‘농어업인삶의질법’이라  
 한다)에서는 여성농업인이 아닌 ‘농어촌 여성’<sup>47)</sup>의 복지 증진이 규정되어 있다.<sup>48)</sup> 생각건대,  
 이 법은 복지에 관한 정책의 근거가 되므로 이를 여성농업인에 한정하지 않고 농촌에 거주하  
 는 여성으로 확대한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인 복지 증진에 관해 규정한 다른 조항에서도 농  
 업식품기본법상 농업인 요건에 해당하는 농업인과 농촌 주민을 포함하는 용어로서 ‘농어업  
 인등’이 쓰이고 있다.<sup>49)</sup>

47) 농촌 여성이라는 용어는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을 총칭하는 편의적인 말로서 쓰여 왔으며, 여성을 수동적이  
 고 우연히 모여 살게 된 집단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농업에 종사하는지 여부에 상관없  
 이 농촌에 있는 여성을 일반적으로 지칭하던 ‘농촌부녀자’ 또는 ‘농촌 여성’이라는 말은 농가의 다양해진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적인 직업인으로서 여성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여기기 어렵다는 점에서 여성농업인으로 부르려는  
 움직임이 생기게 된 것이라고 한다. - 김경미 외, 여성농업인의 법적 지위 부여를 위한 시론적 접근, 아시아여성연  
 구 제40호, 2001, 89-90쪽.

48) 현행 법령에서 ‘농촌 여성’이 규정된 입법례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와 「농업  
 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들 수 있다.

49) 이 법 제3조제3호에서는 “‘농어업인등’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촌 주민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과 어촌주민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법은 제18조에서 농어촌 여성의 모성보호, 보육여건 개선,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농어촌 여성의 복지증진의 내용으로 규정된 ‘보육여건 개선’은 자칫 보육은 여성의 역할, 책임이라는 고정관념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실제로 농업활동과 농촌생활의 어려움 속에서 여성농업인을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해 30대 이하에서는 ‘보육·교육시설 확충’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sup>50)</sup> 따라서, 보육여건 개선은 실제로 보육을 담당하는 여성농업인들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일 수 있다. 다만 농어촌 여성의 복지 증진의 하나로서 보육여건 개선을 드는 것은, 보육이 여성의 몫에 해당한다는 고정관념이 기저에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기에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고정관념을 탈피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이러한 내용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의 여러 조문에서 규정되어 있다. 즉, 제1조(목적)에서 “이 법은 여성농업인과 여성어업인의 권익 보호, 지위 향상, 모성권 보장, 보육여건 개선, 삶의 질 제고 및 전문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농어업인의 능력 개발과 지위 향상, 모성권 보장,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에서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고, 제11조(여성농어업인의 모성권 보장과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에도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양성평등기본법」 제26조에서는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의 하나로 영유아보육 등 양질의 양육서비스를 확충하도록 규정하면서 특정 성을 언급하고 있지 않으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2조(영유아의 보육지원 등)에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의 보육 여건 개선을 위하여 국공립 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하거나 그 밖에 어린이집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하여 보육의 문제를 여성의 전유물로 보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이 농어촌의 보육여건을 개선할 경우 농어촌 여성을 포함한 농어촌 주민 전체의 복지가 증진될 것이므로 이와 관련한 고정관념은 탈피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50) 안석 외, 2018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농림축산식품부 연구용역보고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9, 94쪽.

###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1) 후계농어업인 선정시 농어촌 거주 여성 우대(타법으로 이관)<sup>51)</sup>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 및 지원)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농업 또는 어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자의 영농 또는 영어계획 등을 평가하여 후계농업경영인(後繼農業經營人) 또는 후계어업경영인(後繼漁業經營人)(이하 “후계농어업경영인”이라 한다)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⑦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농어촌에 거주하는 여성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기준 등)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후계농어업경영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선정 인원의 5분의 1 이상을 농어촌에 거주하는 여성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선정 및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업(專業)적 농어업인력 확보를 위하여 후계농어업인의 영농 또는 영어 계획 등을 평가하여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후계어업경영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후계어업경영인을 선정하는 경우 청년농어업인에 대해서는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으로 따로 선정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후계어업경영인 및 제2항에 따른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이하 “후계농어업경영인등”이라 한다)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발전단계별로 자금, 컨설팅 또는 농어업기술·경영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후계농어업경영인등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농어촌에 거주하는 여성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5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2020. 5. 19자로 삭제되었고,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0. 5. 19에 제정되어 2021. 5. 20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아직 시행규칙이 마련되지 않아 종전의 농어업경영체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이라 한다)에는 성별 구분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2020년 5월 19일 일부 개정 전에는 성별 구분 조항이 존재했었다. 개정 전 법률 제10조(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 및 지원) 제7항에서는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에 관해 농어촌 거주 여성 및 다문화 가족 구성원에 대한 우대를 규정하였다. 그러나, 2020년 5월 19일 후계농어업인과 청년농어업인을 육성하여 지속가능한 농어촌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해당 규정은 이 법에서 삭제되었고, 동일한 내용이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에 규정되었다. 종전 규정에 따르면, 후계농어업경영인을 선정할 때 농어촌에 거주하는 여성과 다문화가족지원법상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을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서는 “선정 인원의 5분의 1 이상을 농어촌에 거주하는 여성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후계농어업경영인 선정에 있어서 그동안 과소평가되어 온 농어촌 거주 여성과 다문화가족 구성원을 일정 수 이상 포함시키기 위한 적극적 조치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할당 비율이 문제가 아니라 자격 요건을 좀 더 완화시킴으로써 보다 많은 여성들이 영농후계 인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sup>52)</sup>

## (2) 공동경영주 제도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① 농어업·농어촌에 관련된 용자·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어업경영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농어업경영정보”라 한다)을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농업경영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농지·축사·임야·원예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농산물, 생산방법 및 가축사육 마릿수 등 농업경영 관련 정보 및

52) 정은미 외, 6차 산업(농업융복합산업) 특성성별영향분석평가, 여성가족부 연구용역 보고서, 86쪽.

- 용자·보조금 등의 수령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농업경영정보”라 한다)
2. 어업경영체: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27조에 따른 어선·양식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수산물, 생산방법 및 어업생산규모 등 어업경영 관련 정보 및 용자·보조금 등의 수령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②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 또는 변경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및 변경 절차와 농어업경영정보 등록부의 작성·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조(등록대상 농업경영정보 및 어업경영정보)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농업경영 관련 정보: 별표 1에 따른 정보
  2. 어업경영 관련 정보: 어업인의 성명·주소, 어업법인의 법인명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어업·양식업 면허·허가·신고 현황, 어업시설 및 양식시설의 면적, 어선규모, 경영형태, 어종별·품목별 생산량 및 그 밖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조(농업경영정보의 등록) ① 농업경영체는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농업경영 관련 정보(이하 “농업경영정보”라 한다)를 등록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경영정보 중 임야와 관련된 정보를 등록하려면 별지 제1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별표 1 제5호 각 목에 따른 보조금 등의 신청(이하 “보조금등의 신청”이라 한다)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2. 보조금등의 신청을 하는 경우: 농지 소재지 관할 읍장·면장 또는 동장(이하 “읍장·면장·동장”이라 한다)이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현재 이 법에는 성별 구분 조항은 존재하지 않으나, 이 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인정되는 농업경영체 등록에 있어서 도입된 공동경영주 제도는 사실상 여성농업인에게 적용되는 제도로서 차별적 요소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법 제4조에 따라 농어업·농어촌에 관련된 용자·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업경영체는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농업경영체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의미<sup>53)</sup>하며, 농업경영체는 농가경영안정, 생산지원 등 지원의 대상이 될 경우 경영주가 지원 대상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경영주의 성별 비율에 따라 정책 지원에도 차등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현재 경영주로 등록할 경우에 농민수당, 직불금, 면세유, 농업용 기자재 면세율 적용, 재해보험, 연금보험 등 사회보장 등이 지원된다.<sup>54)</sup>

한편, 이 법 시행규칙 제3조는 농업경영체(농업인과 농업법인)는 일정한 서식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농업경영체는 ‘경영주’와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구분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농가의 대표인 경영주는 남성이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그 배우자인 여성은 경영주의 농업인에 해당하였다. 2008년 농업경영체 등록 시행 당시 주로 농가의 가장인 남성이 자동으로 경영주가 되고 그 배우자인 여성농업인은 농업노동과 경영에 참여하고 있더라도 무급 가족 노동자에 불과했던 현실을 반영하여 2016년 3월 농어업경영체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의 개정을 통해 경영주의 배우자인 여성도 경영주로 인정하는 ‘공동경영주’<sup>55)</sup>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2016년 제도 도입 당시에는 경영주의 배우자가 공동경영주로 등록할 때 경영주의 동의가 필요했으나,<sup>56)</sup> 공동경영주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영주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배우자가 스스로 공동경영주로 등록할 수 있도록 2018년 1월에 해당 서식을 개선하게 되었다.

53) 이에 대해 농업인은 농업경영체를 구성하는 구성원으로서 농업경영을 하거나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인 개인을 의미하지만, 농업경영체는 경영체를 구성하고 있는 인력과 자본의 결합체이며, 농업인에는 경영을 담당하는 경영주 뿐만 아니라, 단순 종사자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은 경영주체가 아니므로 농업경영체와 동일하게 취급될 수 없다는 점에서 농업인과 농업경영체의 개념에는 차이가 있다고 한다 - 임소영 외, 농가 및 농업인 정의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0, 30쪽.

54) 정은미 외, 여성농업인 지위향상을 위한 농업경영체 제도 개선 연구, 농림축산식품부 연구용역보고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0, 53쪽.

55) 공동경영주는 경영주 외의 농업인이 경영주의 배우자인 경우에 공동경영주로서 등록을 희망하여 별지 서식에 기재함으로써 인정된다. - 정은미 외, 여성농업인 지위향상을 위한 농업경영체 제도 개선 연구, 농림축산식품부 연구용역보고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0, 21-22쪽.

56)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6.3.24.〉에 의하면 공동경영주 여부란에 공동경영주 표시는 경영주 외의 농업인 중 배우자에 한하여 경영주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었다.

그런데, 공동경영주 관련 통계를 분석해보면 제도 도입 이후에 경영주 외 농업인 중 배우자가 공동경영주로 등록한 비율은 2018년 4%에서 2019년 5.6%, 2020년 6월 기준 6.9%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경영주는 대부분 여성인 것으로 나타나(2020년 6월 기준 전체 44,245명 중 38,969명으로 88.1%) 공동경영주 제도의 효과는 주로 여성에게 돌아간다고 할 수 있다. 현재 공동경영주에게 인정되는 혜택으로 소개되고 있는 등록시 출산급여와 행복바우처<sup>57)</sup> 지원에 관한 내용도 여성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농업경영체 등록 여성농업인 추이<sup>58)</sup>

		농업인 (A+B+C)	경영주 (A)	경영주외 농업인(B)	경영주 외 농업인 중 배우자	공동경영 주(C)	배우자 중 공동경영주 비율
18년	계	2,443,567	1,659,100	757,643	666,406	26,824	4
	여성	1,122,964	448,486	650,529	608,596	23,949	3.9
	비율	46	27	85.9	91.3	89.3	
19년	계	2,446,568	1,686,068	724,575	644,280	35,925	5.6
	여성	1,119,590	465,683	622,236	587,169	31,671	5.4
	비율	45.8	27.6	85.9	91.1	88.2	
20년 6월	계	2,475,612	1,721,229	710,138	641,771	44,245	6.9
	여성	1,131,633	483,104	609,560	583,029	38,969	6.7
	비율	45.7	28.1	85.8	90.8	88.1	

출처: 정은미 외, 여성농업인 지위향상을 위한 농업경영체 제도 개선 연구, 농림축산식품부 연구용역보고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0, 13쪽 표 2-5

57)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촌의 여성농업인에게 문화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건강·문화·여행·스포츠 부문을 이용가능한 바우처(연간 20만원 상당)을 만 20~75세의 농업경영체 등록된 여성농업인에게 지원하고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참조.

58) 정은미 외, 여성농업인 지위향상을 위한 농업경영체 제도 개선 연구, 농림축산식품부 연구용역보고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0, 13쪽 표 2-5

■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 8. 25.>

농업경영체		[ ] 등록 [ ] 변경등록		신청서(농업인용)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조해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처리기간	농업경영체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6쪽 중 제1쪽) 30일
접수일				※ 다만, 보조금 신청을 수반하는 경우	90일
1. 일반현황					
성명	국적	국내	주민등록번호	전자우편	
	농업인 등록번호	국외	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우편번호		
주 소	주민등록주소지		업종종사형태		
	마을명				
영농 이력	농업시작형태	[ ] 전 생애 농업에 종사(신규포함) [ ] 다른 산업에서 전환 (귀농포함)	농업종사형태	[ ] 전업 [ ] 겸업	
	농업종사기간	년(농업 시작 연도 :    년)	신규등록시유	[ ] 분리 [ ] 귀농 [ ] 상속 [ ] 기타(            )	
성명	농업인 등록번호	연락처	농업시작형태	농업종사기간	③ 공동경영주 여부(O, X)
	(외국인등록번호)	경영주와의 관계	[ ] 전 생애 농업에 종사 [ ] 전업 [ ] 다른 산업에서 전환 [ ] 겸업	농업종사 형태	년(농업 시작 연도 :    년)
			[ ] 전 생애 농업에 종사 [ ] 전업 [ ] 다른 산업에서 전환 [ ] 겸업	년(농업 시작 연도 :    년)	

※ ③ 공동경영주 여부는 ② 경영주 외의 농업인란 중 경영주와의 관계란에 '배우자'로 기입한 경영주 외의 농업인에 한해 공동경영주 등록 희망 여부에 따라 O 또는 X로 표시합니다.  
(경영주 외의 농업인에 대해서는 뒤쪽에 있는 작성방법 1. 일반현황 ②란 경영주 외의 농업인에 대한 설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97mm×210mm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경영주인 농업인은 ‘농업경영체 내에서 농작물의 경작, 가축의 사육, 임업 등 농업경영의 의사결정 및 농업소득의 귀속 주체가 되는 농업인’을 말하며<sup>59)</sup>, 경영주 외의 농업인은 경영주를 제외한 농업인으로서, i) 경영주의 가족으로서 일정한 요건<sup>60)</sup>을 모두 충족한 사람, ii) 경영주의 가족원이 아닌 농업종사자의 경우 경영주와 1년 중 90일 이상 농업경영이나 농지경작활동의 고용인으로 종사한다는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를 제출한 사람을 의미한다.<sup>61)</sup> 이러한 경영주 외 농업인이 경영주의 배우자인 경우에 공동경영주로 기재할 수 있는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공동경영주 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경영주의 배우자로서 경영주와 함께 농업노동에 종사하면서도 그 지위와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던 현실을 고려하여 경영주와 함께 경영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법령상에서 공동경영주는 경영주와 같은 지위 및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sup>62)</sup>

가장 대표적인 차별적 요소는 농업경영체의 경영주는 농업 이외의 겸업 활동을 수행하여도 농업인의 지위를 유지하지만, 경영주의 배우자는 겸업 소득 발생시 농업인 지위를 박탈당하기 때문에 공동경영주로서의 지위도 갖지 못하게 된다는 점이다. 이는 공동

경영주를 경영주 외 농업인에게만 인정하고 있는 현 제도 하에서 농업인의 요건에

59)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0. 8.25.)의 작성방법 1. 일반현황 ①란의 경영주인 농업인에 대한 설명임

60) ① 주민등록표에 등록(변경등록)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연속적으로 경영주의 가족으로 함께 등록된 사람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를 달리하는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배우자 또는 경영주와 혼인한 외국인로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국내 체류자가 경영주의 주민등록표 상의 주소와 등록(변경등록)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동일한 사람은 예외로 함)

② 경영주의 주소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이나 제61조에 따른 준농촌에 위치하는 경우로서 경영주의 가족원인 농업종사자(경영주의 주소가 농촌·준농촌이 아닌 지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가족원인 농업종사자의 영농사실이 확인된 경우로 한정됨)

③ 「국민연금법」 제8조의 사업장가입자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의 직장가입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단, 18세 미만 제외)

61)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0. 8.25.)의 작성방법 1. 일반현황 ②란의 경영주외의 농업인에 대한 설명임

62) 현행 법령 검색 결과, ‘공동경영주’가 규정된 예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농림축산식품부훈령 제352호) 제39조(자금지원우선순위안 작성 등) 제6호에서 자금지원우선순위 대상자로서 “공동경영주로 등록한 자 등 농림축산식품분야 법령에서 추진하는 정책에 부합하는 요건을 갖춘 농업경영체에 해당하는 자”를 들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공동경영주에게 인정된 혜택으로 보인다. 반면에,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8-101호) 제6조에서는 면세유류관리대상 작성·보관을 규정하면서, 농가는 ‘경영주’로 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면세유 공급은 경영주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법상 사업장 가입자,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 가입자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요건이 포함됨<sup>63)</sup>에 따라, 겸업 소득 발생으로 보험 가입자격을 취득하게 되면서 자동적으로 공동경영주도 되지 못하는 것이다. 여성농업인이 겸업을 할 경우 공동경영주의 지위 상실로 인하여 그동안 받아왔던 행복바우처나 농협조합원 가입의 자격요건을 상실하게 된다.<sup>64)</sup> 농가소득에서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24.9%(2019년 기준) 밖에 되지 않고,<sup>65)</sup> 농의 소득이 농가 소득을 지탱하고 있는 현실에서 대부분의 여성 농업인들은 부족한 농업소득을 보완하기 위하여 요양보호사나, 학교 식당, 인근 공장이나 식당 등에 취업하여 일을 하면서도 이와 같이 겸업을 하면서도 농사일이나 마을 대소사는 그대로 여성들의 몫인데도 현재 경영체 등록 과정에서 여성들은 농업인으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sup>66)</sup>

이와 같이 공동경영주 제도는 농업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 농업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지만, 법령 본문이 아닌 서식에 근거를 두고 있어 법적 지위가 미흡하고, 겸업 소득 발생시 농업인 지위 상실과 같이 경영주에 비해 차별적 요소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공동경영주 제도의 법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제2절 성별 특성

여성가족부의 성별영향평가지침에 따르면 성별 특성은 법령에 성별에 따른 신체적, 사회·문화적 차이 등을 고려하여 이를 반영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렇지 않다면 성별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다.<sup>67)</sup> 여성과 남성 간에 신체적 차이, 사회·문화적 차이가 존재할 경우 그 차이에 따른 다른 처우를 하는 것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성별 특성의 반영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63)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제4조(농업인 확인 기준) 제3호 가목 (3)

64) 정은미 외, 여성농업인 지위향상을 위한 농업경영체 제도 개선 연구, 농림축산식품부 연구용역보고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0, 54쪽.

65) 정은미 외, 앞의 보고서, 54쪽의 표 5-1 농가경제 조사 항목별 추이

66) 이수미, 여성농민 성불평등 실태조사를 통해 본 여성농민의 현실과 성평등한 농촌, 성평등한 농촌! 여성 농민 법적 지위 보장을 위한 여성농민 정책대토론회 자료집, 2020. 8. 19, 70쪽.

67) 여성가족부, 2021년 성별영향평가 지침, 2021 22쪽.

##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1) 농업인력 육성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제3장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의 수립·시행

##### 제3절 농업인력의 육성 등

**제24조(가족농가의 경영안정과 농업 종사자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공동체의 유지 및 농촌사회의 안정을 위하여 가족노동력을 중심으로 하는 가족농가(家族農家)의 생산성 향상 및 경영안정과 농가의 특성에 맞는 규모화, 전문화 및 협동화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종사자를 적정하게 확보하고 전문 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25조(후계농업경영인의 육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래의 농업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후계농업경영인(後繼農業經營人)을 지원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26조(전업농업인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문농업기술 및 경영능력을 갖추고 농업 발전에 중추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농업인(이하 “전업농업인”이라 한다)을 육성하는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업농업인을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7조(여성농업인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정책을 세우고 시행할 때에 여성농업인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과 전문인력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여성농업인이 농업경영 등에 참여하거나 기여한 정도에 상응하는 사회·경제적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28조(농업 관련 조합법인 및 회사법인의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판매·수출 등의 효율화를 위하여 협업적 또는 기업적 농업경영을 수행하는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 및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의 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9조(벤처농업 등의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업 분야의 첨단과학기술 및 영농·경영기법의 개발과 벤처농업 등을 지원·육성하는 정책을 세우고 시행한다.

**제29조의2(귀농업인의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업인(농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촌으로 이주한 사람을 말한다)의 성공적인 정착과 경영기반 조성을 위하여 교육·정보 제공, 창업 지원 등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농업식품기본법에서는 농업인력 육성에 관해 제24조부터 제29조의2까지 규정을 두고 있다. 제24조는 가족농가의 생산성 향상 및 경영안정을 위한 정책 수립, 시행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공동체의 유지 및 농촌사회의 안정을 위하여 가족노동력을 중심으로 하는 가족농가의 생산성 향상 및 경영안정과 농가의 특성에 맞는 규모화, 전문화, 협동화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할 의무가 있다. 우리나라의 농업·농촌은 농가를 중심으로 가족의 노동력을 바탕으로 유지,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가족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만, 가족 중심의 농업·농촌에 뿌리박힌 가부장적 문화와 질서를 탈피하여 성평등한 농업·농촌을 만들기 위한 목표가 그 정책 수립에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밖에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전업농업인 육성, 농업 관련 조합법인 등 육성, 벤처농업 육성에 관해서도 여성 농업인 또는 농업 종사자의 비율이 현저하게 낮은 분야에 관해서는 여성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제27조에 여성농업인의 육성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긴 하나, 이 조항만으로 농업인력 육성에 대한 성별 고려가 충분한 것인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현재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상 후계농어업 경영인을 선정할 때에는 농어촌에 거주하는 여성을 일정 비율 우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존재하고 있다. 이것은 농어업에 종사하는 여성의 비중이 커지고 있고, 농어촌 지역이 점차 고령화되면서 지역을 활성화하고 신규 농업인력을 육성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 도입된 규정으로서, 전업농업인 육성, 벤처농업 육성, 농업조합법인 등 육성, 귀농업인 육성 등 인력 육성 정책에 있어서 성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지 않은지 검토해야 할 것이다.

## 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 (1) 농어업인 질환 예방·치료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농어업인 질환의 예방·치료 등 지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 작업으로 인하여 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치료 및 보상을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농어업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농어업의 작업환경 및 작업특성에 대한 작업자 건강위해 요소를 측정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매년 농어업인의 질환 현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농어업인의 건강검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조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2(농어업 작업자 건강위해 요소의 측정 등)**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농어업 작업자 건강위해 요소의 측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1. 소음, 진동, 온열 환경 등 물리적 요인
2. 농약, 독성가스 등 화학적 요인
3. 유해미생물과 그 생성물질 등 생물적 요인
4.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특성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농어업 작업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장비의 개발 및 보급
2. 농어업 작업 안전보건기술의 개발 및 보급
3. 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 및 재해 예방교육의 실시

**제9조의3(농업인 질환 현황 조사)** ①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농업인의 질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이하 이 조에서 “질환현황조사”라 한다)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질환현황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별·나이 등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
2. 조사 대상자의 건강 및 안전 특성에 관한 사항
3. 농업 작업으로 인한 질환의 발생 경로 및 현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업 작업 환경 및 작업 특성에 관한 사항

③ 질환현황조사는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통계자료·문헌 등을 통한 간접조사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④ 농촌진흥청장은 질환현황조사를 하기 전에 조사 대상자의 선정기준, 조사 일시 및 방법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법 제14조는 농어업 작업으로 인해 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치료 등 지원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남성과 여성 농업인의 작업형태의 차이에 따라 작업환경 및 유발 질환에 차이<sup>68)</sup>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지원 정책 마련시 성별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sup>69)</sup> 이에 따라 농어업의 작업환경 및 작업특성에 대한 작업자 건강위해 요소를 측정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농어업인의 질환 현황을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 시행령 제9조의3 제2항에서는 농어업인 질환현황 조사의 대상을 열거하면서 ‘성별’을 언급하고 있어서 성별 통계의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농어업인의 질환 예방·치료 지원을 위한 정책 마련에 성별 특성 고려는 언급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동법 제14조제1항, 제2항에서 성별의 특성을 반영하도록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서는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sup>70)</sup>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정부는 여성농업인 대상 특수건강검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sup>71)</sup>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여성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여성농어업인 건강검진의 주기적 실시 등이 규정되어 있지만, 이 법 제14조제1항에서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질환 예방·치료 지원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해도 법률 간의 중복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68) 농작업에서의 여성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경남·경북·제주 일대의 농업에 종사하는 남녀 358명을 대상으로 작업형태와 인간공학적 작업환경 및 근골격계 증상 등을 조사한 결과, 여성의 하루 평균 농작업 시간은 9.6시간으로 남성 9.2시간 보다 상대적으로 길고, 작업형태의 경우 남성은 수확물을 들어 올리거나 장시간 서서 하는 작업이지만 여성은 장시간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아서 하는 작업이 많음. 근골격 질환 의심 환자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데, 여성 농업인의 신체 특성을 고려한 농작업 재해예방 대책은 미흡한 것이 현실이라는 연구결과도 있음. - 김유창 외, “농작업에서 성별에 따른 근골격계 질환 조사”, 대한인간공학회 2010 추계학술대회 발표자료, 2010, 94~98쪽. - 박선영 외,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여성가족부 연구용역보고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3, 86쪽에서 재인용

69) 박선영 외, 앞의 보고서, 87쪽 참조.

70) 제11조의3(여성농어업인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시행)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권 보장과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여성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여성농어업인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시기·항목,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1) 여성농업인 대상 특수건강검진 시범사업은 제5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에 신규과제로 포함되었다. - 내년 ‘여성농민 특수건강검진사업’ 시범 추진, 농민신문 2021년 1월 6일 기사 참조(<https://www.nongmin.com/news/NEWS/POL/GOV/331617/view>)(2021. 6. 25 최종 검색).

###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농어업교육 계획의 수립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경영체의 경영능력 및 기술수준에 맞는 경영·기술 교육 또는 전문컨설팅 등의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법 제22조제1항은 농어업경영체에 대한 경영·기술 교육 또는 전문컨설팅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농업경영체는 농업 경영의 단위로서 그 능력과 규모, 기술수준에 적합한 교육 및 컨설팅이 제공된다면 농업경영체의 소득 향상 및 발전 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나 컨설팅의 경우 대부분 경영주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 것인데, 공동경영주에게도 교육 기회를 확대해야 함은 당연하고, 교육 내용 및 커리큘럼 구성에 있어서 성별 특성을 고려함으로써 전문 농업경영인으로 육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제3절 성별 균형 참여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도록 시책을 마련해야 하고, 형식을 불문하고 자문 또는 심의, 의결을 하기 위한 합의제 기관을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령상 존재하는 위원회 등에 있어서 성별 균형 참여가 보장될 수 있으므로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구성에 성별을 고려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5. 19.>

1. 국가 및 시·도가 구성하는 위원회: 실무위원회
2. 시·군·구가 구성하는 위원회: 시·도위원회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공표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직위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용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기관의 연도별 임용목표비율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이하 이 조에서 “관리직 목표제”라 한다)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1. 직종·직급·고용형태별 남녀 직원 현황
  2. 관리직 남녀 비율 현황
  3. 남녀 직원 근속연수 현황
  4. 승진 대상자 중 남녀의 승진 비율
  5. 남녀 관리직에 대한 연도별 임용 목표 및 달성 시기
- ⑤ 공공기관의 장은 관리직 목표제 등을 시행하여야 하고, 해당 기관의 임원 임명 시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정책심의회)** ① 농림축산식품부에 중앙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두고, 시·도에 시·도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두며, 시·군 및 자치구에 시·군·구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각급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는 기본계획,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 그 밖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17조에 따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3. 그 밖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 등에 관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각급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회의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9조(중앙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회의 구성 등)**

- ① 법 제15조에 따른 중앙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중앙 농업정책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중앙 농업정책심의회회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③ 중앙 농업정책심의회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한다.
1. 생산자단체, 농업인단체, 소비자단체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장 12명 이내
  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대학·연구소·국제기구에서 교수·연구위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행정기관·사업체 등에서 10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7명 이내
-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⑥ 중앙 농업정책심의회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 농업정책심의회에 전문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4조(시·도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회의 구성 등)**

- ① 법 제15조에 따른 시·도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시·도 정책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 중 1명은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되며, 다른 1명은 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시·도지사가 위촉한다.
1. 관계 행정기관의 장 3명 이내
  2. 생산자단체, 농업인단체, 소비자단체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장 11명 이내
  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대학·연구소·국제기구에서 부교수·부연구위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행정기관·사업체 등에서 7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9명 이내
-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⑤ 시·도 정책심의회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 정책심의회에 품목별 또는 기능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정책심의회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시·군·구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5조에 따른 시·군·구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시·군·구 정책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 중 1명은 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광역시 자치구의 부구청장을 말한다)이 되며, 다른 1명은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한다.

1. 관계 행정기관의 장 3명 이내
2. 생산자단체, 농업인단체, 소비자단체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장 11명 이내
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대학·연구소·국제기구에서 조교수·연구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행정기관·사업체 등에서 5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6명 이내
4. 지역농업 및 식품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농업인·식품산업 종사자 대표 13명 이내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시·군·구 정책심의회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군·구 정책심의회에 품목별 또는 기능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 정책심의회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법 제15조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을 관한 연차보고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정책심의회가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정책심의회는 중앙, 시·도, 시·군·구 단위에서 모두 구성되며, 각 정책심의회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다. 이 법 시행령에는 제9조와 제14조, 제15조에 각각 중앙, 시도, 시군구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회의 구성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고 여기에 성별에 대한 고려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매월 발표하는 위원회 현황을 검토해보면, 이 법 제15조에 따른 중앙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회의 위원은 총 19명이고, 이 중 위촉직 위원은 7명으로 여성 위원은 4명에 해당하여 여성위원의 비율은 44%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sup>72)</sup> 현재 시·도와 시·군·구 단위의 정책심의회회의 구성에 대한 자료를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위원회에서

위촉직 위원에 여성 비율은 40%를 상회하고 있어 앞서 살펴본 「양성평등기본법」의 요청을 충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개별 법령에 규정하지 않아도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성별 균형 참여는 어느 정도 확보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행정관료에 해당하는 당연직 위원이 전체 위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서 위촉직 위원 중에 40% 이상이라는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전체 위원 중 여성의 비율이 적은 것이 현실이다. 또한,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성별 비율이 지켜진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실질적으로 위원회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성별의 특성을 고려하는 것까지 보장될 것인지 의문이다. 따라서, 실질적인 성별 균형 참여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위원들에 대한 성인지 교육, 안건의 성별 관련성 검토 등 제도의 보완책을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

## (2) 농협 등 생산자단체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생산자단체”란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하략)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생산자단체의 범위)** 법 제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2. 22.>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2.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3.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4. 삭제 <2015. 12. 22.>
5. 농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농산물을 생산하여 공동으로 판매·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농업인 5명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전문생산자 조직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

72)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위원회 현황(2021년 5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공개 자료 (<https://www.mafra.go.kr/mafra/366/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bWFmcmElMkY3MSUyRjMyNzI3MiUyRmFydGNsVmllcy5kbyUzRg%3D%3D>)(2021. 6. 25 최종 검색).

## 「농업협동조합법」

**제19조(조합원의 자격)** ① 조합원은 지역농협의 구역에 주소, 거소(居所)나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이어야 하며, 둘 이상의 지역농협에 가입할 수 없다.

②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지역농협의 구역에 두고 농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지역농협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③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자치구를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는 품목조합은 해당 자치구를 구역으로 하는 지역농협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농업인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임원의 정수 및 선출)** ① 지역농협에 임원으로서 조합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2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되, 그 정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이 경우 이사의 3분의 2 이상은 조합원이어야 하며, 자산 등 지역농협의 사업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이 아닌 이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⑧ 지역농협은 이사 정수의 5분의 1 이상을 여성조합원과 품목을 대표할 수 있는 조합원에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여성조합원이 전체 조합원의 100분의 30 이상인 지역농협은 이사 중 1명 이상을 여성조합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지역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의 자격)**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이하 “지역농협”이라 한다)의 조합원의 자격요건인 농업인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자
2.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3. 누에씨 0.5상자(2만립(粒) 기준상재분) 이상의 누에를 사육하는 자
4. 별표 1에 따른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자와 그 밖에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을 사육하는 자
5. 농지에서 33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을 설치하고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자
6. 66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채소·과수 또는 화훼를 재배하는 자

② 지역농협의 이사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합원의 자격요건인 농업인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인정 기간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7. 12. 26.>

1.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지 또는 농업·축산업 경영에 사용되는 토지·건물 등의 수용이나 일시적인 매매로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2.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누에나 가축의 일시적인 매매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

20조에 따른 가족의 살처분으로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일시적으로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방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농업·농촌 분야에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성별 균형 참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생산자단체에서도 여성의 참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 농업식품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르면 생산자단체란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농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가 대표적인 생산자단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농업협동조합법」 제45조제8항(여성임원할당제)에 따라 지역 농협 임원의 여성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sup>73)</sup> 2019년 말에 지역 농협 전체 임원 수(12,712명) 대비 여성임원수는 1,094명으로 8.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전체 조합원 수 대비 여성 조합원수는 2019년 기준으로 32.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생산자단체에 있어서 여성의 대표성은 여전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sup>74)</sup>

현재 지역농협에서는 농업인의 가족원으로서 농업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자는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복수조합원제도가 승인<sup>75)</sup>되었지만, 지역축협과 품목별·업종별 농협의 경우 가족원은 복수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없어서 여성 조합원 비율이 현저히 낮다고 할 수 있다.<sup>76)</sup>

73) 지역농협의 여성조합원 및 여성임원 비율은 2015년 말 30.8/4.5% → 2016년 말 31.2/4.7% → 2017년 말 31.7/6.0 → 2018년 말 32/8.3% → 2019년 말 32.6/8.6%로 나타났다. - 지역농협 유리천장, 얼마나 깨졌나?, 한국농정 2020년 7월 12일 기사 참조(<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1379>)(2021. 6. 25 최종 검색).

74) 이에 대해 지역 농협 정책은 보통 농민 단위가 아니라 농가단위로 이루어지므로, 이미 가정에 한명의 조합원이 있는 상태라면 농자재 구입과 같은 농협의 정책 자금을 활용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 조합원이 되려면 출자금을 내고 경제사업이용량 등을 충족해야 하는데 조합 가입의 필요성을 체감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견해도 있다. - 지역농협 유리천장, 얼마나 깨졌나?, 한국농정, 2020년 7월 12일 기사 참조(<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1379>)(2021. 6. 25 최종 검색).

75) 현행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과 ‘조합원의 자격요건인 농업인의 확인 방법 및 기준 고시’에 따르면 ‘농업인의 가족원으로서 농업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자’는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으므로 현재 지역농협에서는 농가경영주의 가족원(부인 등)도 조합원이 될 수 있다. - “지역축협·품목농협도 복수조합원제 도입하도록 최선”, 농민신문 2020년 6월 8일 기사 참조(<https://www.nongmin.com/plan/PLN/SRS/323268/view>) (2021. 6. 25 최종 검색).

## 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 제10조(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 ①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에 관한 정책을 총괄·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2.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 실적에 대한 점검·평가 결과
  3. 해당 연도 시행계획
  4.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 정도
  5. 그 밖에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개발 정책 등에 관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장관·교육부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중소벤처기업부장관·국무조정실장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2.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인단체의 대표자와 농어촌의 복지·교육·지역개발 분야에 풍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 ⑤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⑥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되, 간사위원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된다.
- ⑦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또는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 ⑧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⑨ 위원회의 운영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기능·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6) 2020년 1월 말 기준 지역 농협의 여성조합원 비율은 33.8%(65만9535명)에 이르지만, 지역축협은 17.5%(1만 7648명), 원예농협은 15.4%(5615명), 인삼농협은 18%(2218명)에 불과하다고 한다. - “지역축협·품목농협도 복수조합원제 도입하도록 최선”, 농민신문 2020년 6월 8일 기사 참조(<https://www.nongmin.com/plan/PLN/SRS/323268/view>) (2021. 6. 25 최종 검색).

이 법은 제10조에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의 구성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성별에 대한 고려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 현재 이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실무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는 성별을 고려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반면, 법률에 규정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구성에는 성별 고려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법 제10조 제7항에 따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시행계획의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3. 법 제41조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로 지원되는 사업의 총괄·조정 및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1의2. 통계청장, 경찰청장, 소방청장,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및 해양경찰청장
2. 농어촌의 복지·교육 또는 지역개발에 관한 풍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한다.

⑤ 실무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분과위원회와 특별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매월 공개하고 있는 행정기관 위원회 현황 및 활동 내역서<sup>77)</sup>에 따르면

동법 제10조제1항에 근거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는 위촉직 위원(9명) 중 여성(4명)의 비율이 44%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40% 이상이라는 「양성평등기본법」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긴 하다. 그러나,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도록 하는 규정을 둔 반면, 법률에서는 그러한 규정이 없으므로 성별 고려의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기 때문에 법률에도 ‘성별을 고려하여’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 이 법 제10조의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당연직이 비중이 너무 과다(총 25명 중 16명)하고 당연직의 대부분은 행정조직의 관료로 여성의 비율이 낮기 때문에 위촉직 위원 비중을 확대하여 여성의 비율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다.<sup>78)</sup>

###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 법에서는 위원회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 제4절 성별 통계

성별 분리 통계의 생산은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이 처해 있는 상황을 좀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중요한 기초자료로서, 국내외적으로 성별분리 자료 생산과 배포가 강조된 바 있다.

1995년 제4차 북경 세계여성회의에서는 ‘여성관련 정책의 기획 및 평가를 위해 성별분리 자료와 정보를 생성하고 배포할 것’을 적극적인 전략으로 채택하였고,<sup>79)</sup> 「통계법」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와 「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성인지 통계) 제1항은 성별로 구분한 통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성별영향평가법」 제6조에서는 성별영향평가지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77)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위원회 현황(2021년 5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공개 자료(<https://www.mafra.go.kr/mafra/366/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bWFmcmElMkY3MSUyRjMyNzI3MiUyRmFydGNsVmllldy5kbyUzRg%3D%3D>) (2021. 6. 25 최종 검색).

78) 정은미 외, 6차산업(농업융복합산업)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여성가족부 연구용역 보고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7, 82쪽.

79) 주재선 외, 2012 한국의 성 인지 통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2, 3쪽.

## 성별 통계를 규정한 입법례

법령명	조문 내용
통계법	<p><b>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b> ①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 종류, 목적, 조사대상, 조사방법, 통계표 서식, 조사사항의 성별구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미리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승인을 받은 통계의 작성을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통계법 시행령	<p><b>제25조(통계작성의 승인 사항)</b> 법 제18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통계의 명칭 및 종류</li> <li>2. 통계의 작성 목적</li> <li>3. 통계작성의 사항. 다만, 작성의 사항이 자연인이면 성별 구분을 포함하되, 통계청장이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성별을 구분할 필요가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성별구분을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li> <li>4. 통계작성의 대상. 다만, 작성의 대상이 자연인이면 성별 구분을 포함하되, 통계청장이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통계 방법상의 한계로 성별 구분이 곤란하거나 그 내용상 성별 구분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성별 구분을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li> <li>5. 통계작성의 기준시점·기간 및 주기. 다만, 조사통계의 경우에는 통계작성기간 대신 통계조사기간을 적는다.</li> <li>6. 통계작성의 방법</li> <li>7. 자료수집 체계</li> <li>8. 통계작성에 사용하려는 분류 또는 기준(법 제22조에 따른 표준 분류 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은 다른 기준을 말한다)</li> <li>9. 조사표, 보고서식 및 통계표 등 통계의 작성이나 공표와 관련된 서식</li> <li>10. 국제기구 통계작성기준 준수 여부(기준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li> </ol>
양성평등기본법	<p><b>제17조(성인지 통계)</b>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인적(人的)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이하 이 조에서 “성인지 통계”라 한다)를 산</p>

	<p>출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보급하여야 한다.</p> <p>② 여성가족부장관은 통계청장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성인지 통계의 개발, 산출, 자문 및 교육훈련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p>
<p><b>성별영향평가법</b></p>	<p><b>제6조(성별영향평가의 고려사항)</b>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별영향평가를 하고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lt;개정 2018. 3. 27.&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성별에 따라 구분한 성별통계</li> <li>2. 성별 수해분석</li> <li>3. 성별영향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방안</li> <li>4.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의 기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li> </ol>

그런데 농업·농촌 분야 관련 법령 중에서 실태조사나 통계 생산에 관한 규정에 있어서 성별을 구분하여 작성 또는 생산하도록 규정하지 않은 예가 있어서 이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여성농업인에 대해서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8조제1항에 따라 5년마다 실태 조사가 실시되고 있으나, 전체 여성 농민의 농사 규모, 작물재배 형태, 경작지 면적 등을 파악할 농업 통계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sup>80)</sup> 성별 구분이 없는 통계는 여성과 남성의 다른 요구와 상황을 파악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정책 내용이나 수단 집행방식 수혜 등에 있어서 어느 특정 성별에 불이익과 불균형을 누적적으로 초래할 수 있다.<sup>81)</sup> 따라서, 여성 농민의 현실을 파악하기 위한 성별 통계의 생산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80) 이수미, 여성농민 성불평등 실태조사를 통해 본 여성농민의 현실과 성평등한 농촌, 성평등한 농촌! 여성 농민 법적 지위 보장을 위한 여성농민 정책대토론회 자료집, 2020. 8. 19, 66쪽.

81) 정혜진·장미, 2018 경기도 성인지 통계,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2018, 3쪽.

##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7조의2(기후변화에 따른 농업·농촌 영향 및 취약성 평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농업·농촌에 미치는 영향과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성을 5년마다 조사·평가(이하 “기후영향평가등”이라 한다)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후영향평가등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 및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5조(북한의 농업 생산체제의 조사·연구 등)** ① 정부는 통일에 대비하여 북한의 농업 생산체제, 농지제도, 농산물유통제도, 농업 생산기반, 농업 과학기술, 농업 경영지도, 농업인 교육 및 농업 통계 등에 관한 조사·연구를 하여야 한다.

농업식품기본법에는 통계 작성의 근거에 관하여 제47조의2 제2항과 제55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제47조의2는 기후영향평가등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 및 통계 작성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작성의 대상에 자연인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확인되어야 할 것인데, 동조 제1항에 따른 기후영향평가등은 기후변화가 농업·농촌에 미치는 영향과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성을 조사·평가하는 것이므로 자연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것이어서 성별 통계로의 개선은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sup>82)</sup> 반면에 제55조는 북한의 농업 전반에 관한 통계 작성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여기에서는 성별 통계 생산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8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기후변화에 따른 농업·농촌 영향 및 취약성 평가 등의 내용 및 방법 등) ①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농업·농촌에 미치는 영향과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성에 대한 조사·평가(이하 “기후영향평가등”이라 한다)는 분야별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 12. 23.>

1. 농업(임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농촌 분야

가. 농업·농촌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기후의 이상(異常) 변화에 관한 사항

나. 농작물재배·축산의 적지(適地) 및 생산성 변화에 관한 사항

다. 돌발 및 외래 병해충·잡초의 이상 발생 및 피해에 관한 사항

라. 농업생태계의 생물다양성 및 생물계절 변화에 관한 사항

마.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농어촌용수 및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분석에 관한 사항

바. 그 밖에 기후변화의 농업·농촌 분야에 대한 영향 및 취약성에 대한 조사·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농업·농촌 분야에서 성별 통계가 일반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을 고려할 때, 통계나 실태조사의 근거가 되는 개별 조항에 성별을 언급하는 방안 외에도 농업·농촌의 기본 법인 동법에 성별 통계 생산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두는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 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농어업인등에 대한 복지실태 등 조사)** ① 정부는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과 농어촌의 지역개발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농어업인등의 복지실태
  2. 농어업인등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 현황
  3. 고령 농어업인 소득 및 작업환경 현황
  4. 농어촌의 교육여건
  5. 농어촌의 교통·통신·환경·기초생활 여건
  6. 그 밖에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과 농어촌의 지역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조사 항목·방법 등을 정할 때에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법은 제8조에서 농어업인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를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에 성별 통계의 근거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 규정에 의한 복지실태 조사는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그 내용을 동조 제1항 각 호에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별에 따른 분리 통계를 생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실태조사를 규정한 다른 입법례를 살펴보면, 실태조사의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거나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법률은 실태조사의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면서도 성별을 규정하지 않은 것이다. 이 법 시행령 제9조제3항에는 농업인의 질환조사시 성별·나이 등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이 규정과 같이 성별 통계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 법 제20조의2는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 운영실태에 관한 조사 근거 규정으로서, 동조 제1항에 조사 사항이 다음의 세가지로 규정되어 있다: ① 조합원(준조합원을 포함한다)의 인적 사항, 주소 및 출자 현황, ② 사업범위와 관련된 사항, ③ 소유한 농지의 규모 및 경작유무 등 현황. 이를 통해 농업법인 등 농업경영체의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인데 여기에 성별에 따른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농업법인과 어업법인에 있어서 종사자의 성별 비율, 성별 대표성 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동조 제1항 제1호에 성별 등을 포함시키도록 개정하여 농업 경영에 있어서 성별 통계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sup>83)</sup>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실태조사)** ① 주된 사무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적법한 운영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3년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운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조합원(준조합원을 포함한다)의 인적 사항, 주소 및 출자 현황
2. 사업범위와 관련된 사항
3. 소유한 농지의 규모 및 경작유무 등 현황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운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영상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에게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행위
2. 등기소와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서류의 열람·복사 또는 그 등본·초본의 발급을 요청하는 행위. 이 경우 열람·복사 또는 그 등본·초본의 발급은 무료로 한다.
3.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하는 행위

③ 제2항에 따라 출입·조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조합원 5명 미만인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
  2. 비농업인 또는 비어업인이 보유한 출자지분이 제19조제2항 또는 제4항에서 정한 출자한도를 초과한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
-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1항에 따른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실태조사 결과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83) 정은미 외, 6차산업(농업융복합산업) 특성성별영향분석평가, 여성가족부 연구용역 보고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7, 86쪽.



## 제4장

# 분석 대상 법령의 성인지적 분석을 통한 개선과제

제1절 성인지적 관점에서 농업인 개념의 재검토

제2절 정책 수립 및 시행에 성별 특성 반영

제3절 정책 결정에의 성별 균형 참여의 효과성 제고

제4절 성별 통계 생산의 근거 마련



## 제4장

# 분석 대상 법령의 성인지적 분석을 통한 개선과제

### 제1절 성인지적 관점에서 농업인 개념의 재검토

#### 1. 농업인 요건의 성별에 따른 효과성 검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농업식품기본법상의 '농업인' 정의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상 여성농업인의 정의와 농어업경영체법에서의 농업경영체 정의에 준용되고 있는 등 농업·농촌 분야의 주요 법령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 농업식품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된 농업인의 정의는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다양한 주체들을 포괄하고 있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농업·농촌에서는 오랫동안 농가를 중심으로 가족노동의 형태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농가의 대표와 그 가족 구성원이 주로 농사일을 수행하였고, 여기에서 여성들은 농사일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가의 가족구성원으로 부차적, 종속적 지위를 인정받아온 것이다. 이와 같이 가족구성원들의 노동의 가치와 그들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현행과 같이 이들을 모두 '농업인'으로 보아 단일의 기준을 적용하기 보다는 다양한 농업 종사자의 형태를 법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sup>84)</sup>

84) 이진영 외(2006)의 연구에서는 '농업인' 기준을 경영주, 공동경영주, 가족종사자, 임금근로자(농가도우미 포함), 예비농업인으로 세분화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 이진영 외, 농업인의 지위인정 범위와 관련제도 정비 방안 연구, 농촌진흥청, 2006, 298-299쪽.

현재 농업인의 기준에 따라 농업인으로 확인받기 위한 절차를 살펴보면,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 소유, 일정 금액 이상의 농산물 판매 실적, 1년에 90일 이상 농업 종사 증명이 규정되어 있는데, 사실상 농촌에서 여성들이 자신의 명의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비율이 높지 않고, 연간 농산물 판매액 증빙도 일정 기관과의 공식적인 영수증, 계약서로만 가능하게 되어 있어서 1년에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했음을 증명함으로써 농업인으로 확인을 받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현재 「농업인 확인서 발급 규정」 제4조제3호 가목에 따르면, 1년에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한 경우에 경영주의 가족원인 경우에는 i)경영주와 주소를 같이 해야 하고, ii)경영주의 주소가 농촌이나 준농촌에 위치한 경우 경영주의 가족이거나, 경영주의 주소가 농촌이나 준농촌이 아닌 경우에는 경작지 소재지 이·통장 또는 이웃의 확인을 받아야 하고, iii)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등의 가입자가 아닌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은 이전보다 절차가 완화되기는 하였지만,<sup>85)</sup> 여전히 남성 중심의 농가 문화 하에서 농업인 확인을 받기 위해서는 경영주인 남성을 기준으로 그의 가족으로서, 그리고 별도의 소득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사실상 여성에게 불합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농업에 종사하는 다양한 유형을 포괄하기 위해 농업인의 개념을 재검토하고, 농업식품기본법과 시행령의 농업인의 정의, 그리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농업인 확인서 발급 규정이 성별에 따라 어떠한 효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85) 2016년에는 특정사유로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 도시(동) 거주 농업인의 가족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직장인 자녀를 통해 보험가입 등) 등은 가족원으로서 농업종사자로 인정하고, 농업인 확인서 발급 신청방법을 방문의 우편·팩스 등 추가, 읍·면·동장이 확인한 농업인 및 영농조합법인 등과 체결한 고용계약서 제출 농업인은 농관원 현지조사 실시하지 않도록 개선하였고, 2019년에는 직장인이 아닌 가족원인 농업종사자가 농업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농촌·준농촌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경영주의 가족원에 대해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요건을 삭제하였다.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6-85호, 2016. 9. 9., 일부개정]과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9-9호, 2019. 2. 8., 일부개정]의 각각의 개정 이유를 검색한 결과이다.

## 2. 공동경영주 제도 개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동경영주 제도는 사실상 여성농업인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경영주와 함께 농가를 경영하는 존재로서 공동경영주의 법적 지위는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현행 법령에 공동경영주를 규정한 예가 거의 없고,<sup>86)</sup> 공동경영주는 농어업경영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본문에서 규정되지 않은 채 농업경영체 등록 서식에서 O, X 표기로써 인정되는 것을 볼 때 더욱 그러하다. 현행 규정을 검토해볼 때, 공동경영주도 경영주 외 ‘농업인’이어야 하므로, 농업인 확인서 발급 규정 제4조제3호가목(3)의 규정에 따르면 공동경영주가 겸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농업인 자격을 상실하기 때문에 결국 공동경영주가 될 수 없는 차별적 결과가 발생한다.<sup>87)</sup> 공동경영주는 여성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므로 이러한 차별적 효과는 여성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차별적인 효과를 야기하는 규정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이러한 차별적 요소를 해소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고,<sup>88)</sup> 중장기적으로는 공동경영주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sup>89)</sup> 경영주와 동일한 지위와 혜택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86)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농림축산식품부 훈령) 제39조제1항제6호에서 인정되고 있을 뿐이다.

87) 그런데, 농업인확인서 발급규정의 해당 규정(「국민연금법」 제8조의 사업장가입자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의 직장가입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단, 18세 미만 제외))은 2019년에 직장인이 아닌 가족원도 농업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정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2019년 개정 전의 규정은 “「국민연금법」 제9조의 지역가입자이거나 제10조의 임의가입자(「국민연금법」 제13조제1항의 임의계속가입자 중 지역임의계속가입자를 포함한다)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단, 18세 이상)이거나 제6조제3항의 지역가입자” 였다.

88) 이에 관하여 정은미 외(2020)의 연구에서는 공동경영주의 겸업 소득 인정하는 임시 개선방안으로서 소농직불금의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즉, 경영주의 배우자가 겸업하는 경우,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에 예외 조항을 추가하여 경영주의 배우자가 겸업을 하는 경우에도 겸업소득의 확인(소규모 농가 직접직불금 지급요건의 농업의 조합소득이 2,000만원 미만이고, 동 규정 서식7의 가족농업인의 영농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을 거쳐 농업인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정은미 외, 여성농업인 지위향상을 위한 농업경영체 제도 개선 연구, 농림축산식품부 연구용역보고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0, 59-61쪽.

89) 이와 관련하여 2013년 4월에 공동경영주 등록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윤명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4592)이 발의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에 다음과 같이 제2항을 신설함으로써 경영주의 가족도 공동경영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는 농어업경영체가 농업인 또는 어업인인 경우에는 그 가족을 공동

법령의 개선이 필요하다. 경영주와 함께 공동경영주를 어디에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예컨대, 농업식품기본법에 농업인의 개념을 경영주, 공동경영주, 가족종사자, 피고용 농업노동자 등으로 나눌 것인지, 농어업경영체법에 직접 경영주와 공동경영주를 규정할 것인지 등)에 관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한 바, 추후 과제로 미룬다. 다만, 어느 법에 규정하든지 경영주와 공동경영주를 함께 규정하고, 개별 법령에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혜택에 관한 규정에서 경영주와 공동경영주를 동등하게 인정해야 할 것이다.

## 제2절 정책 수립 및 시행에 성별 특성 반영

### 1. 가족농 경영인정과 농업인력 육성 정책 수립에 있어서 성별 특성 고려

농업식품기본법 제3장제3절의 ‘농업인력의 육성’에는 제24조에 가족농가의 경영안정과 농업종사자의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시행이 규정되어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농업·농촌은 가족으로 구성된 농가 중심의 문화가 오래 유지되어 왔기 때문에 가족농가의 생산성 향상, 경영 안정 및 농가의 규모에 따른 전문화, 협동화 등이 필요한데, 이러한 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성평등한 가족 문화의 조성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즉, 가족 내 경영의 합리적 개선이 우선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가족 내에서의 성평등 실현을 바탕으로 한 가족구성원의 지위 및 역할이 제대로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 등에서는 수입개방에 대응하는 농가 체질 개선 및 경영합리화의 대안으로 가족경영협약제도가 2001년 도입되었고<sup>90)</sup>, 우리나라에서도 가족노동력에 의존하는 소규모 가족농에서 이러한 가족경영협약의 도입이 논의된 바 있다.<sup>91)</sup> 가족경영협약(정)이란 농업경영·생활의 목표나 역할 분담, 의사 결정 방법, 취업·생활조건, 경영이양 등 자신의 농업 경영·생

경영주로 등록할 수 있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검색한 결과이다([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O1M3Q0Q4Z1M9A1D0X1W7Q4S8A8J6O9](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O1M3Q0Q4Z1M9A1D0X1W7Q4S8A8J6O9))(2021. 6. 25 최종 검색)

90) 우리나라에서도 2004년에 가족경영협약에 대한 시범 도입이 추진된 바 있다고 한다. - 이진영 외, 농업인의 지위인정 범위와 관련제도 정비 방안 연구, 농촌진흥청, 2006, 301쪽.

91) 이진영 외, 앞의 보고서, 300-301쪽.

활에 관해 가족이 서로 합의에 근거하여 약정한 것으로서, 가족이 직접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내용의 재검토를 실시할 필요가 있고, 가족 구성원 각자가 서로의 개성과 능력을 인정하고 대등한 동료로서 경영하는 것을 의미한다.<sup>92)</sup> 여기에서 경영주와 공동경영주의 관계를 대응하게 설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가족농가는 여전히 우리나라 농업·농촌의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가족구성원간 합의를 통한 가족 내 경영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가족 내 성평등을 확보함으로써 나아가 농업·농촌의 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농업 종사자를 전문 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도 다양한 농업 종사자의 유형과 특성에 따른 접근이 필요하고, 여기에 성별에 따른 고려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 2. 농업인 질환 예방·치료 지원에의 성별 특성 고려

농어업인삶의질법 제14조의 농어업인 질환의 예방·치료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에서는 별도로 성별 특성 반영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여성농업인과 남성농업인은 신체적 특성 및 작업 환경의 차이로 인해 자주 유발하는 질환이나 증상이 다른 것으로 나타나 이를 위한 예방, 치료 지원 정책을 수립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한 질환 현황 조사 사항으로 이 법 시행령에 성별이 명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정책 수립의 근거 규정에서도 성별에 따른 특성을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 제3절 정책 결정에의 성별 균형 참여의 효과성 제고

### 1.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성별 고려

분석 대상 법령에서 각종 위원회 규정을 검토한 결과, 위원회 구성 규정에 성별을 고려하도록 규정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양성평등기본법에서의 위원회의 성별 비율은 대부분 잘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러한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특정 성이

92) 정은미 외, 여성농업인의 경제·사회적 역할 제고방안(2/2차연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3, 139쪽.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수적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곧 정책결정 과정에서 성별 특성을 고려하도록 보장하는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양성평등기본법에 이러한 성별 균형 참여 규정을 둔 이유는 위원회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성별 균형 참여를 통해 실질적으로 성별에 따른 고려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위원회 성별 구성이 일정 비율을 충족했다고 해서 성별 균형 참여가 실현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해보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위원회에서 논의될 안건에 대해 성별 관련성을 사전 검토하여 논의 과정에서 성별 특성 반영이 이루어지도록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sup>93)</sup> 또한, 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성인지 교육 등을 실시함으로써 위원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 2. 생산자단체 대표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지원

현재 「농업협동조합법」에는 지역농협의 여성 임원 비율 할당제가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성 임원 비율이 10%를 넘지 못하고 있으며, 경영주의 가족원으로서 농업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자도 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으나 여전히 여성 조합원의 비율도 낮다고 할 수 있다. 농협과 같은 생산자단체에 있어서 중요한 의사결정에 성별의 균형 참여가 반드시 요구되며, 그러한 점에서 여성 조합원 및 여성임원의 비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그런데, 지역 농협에 위와 같은 복수조합원 제도가 인정되어 있는 반면, 지역 축협과 품목별·업종별 농협에서는 이와 같은 복수조합원 제도가 인정되지 않아 농가에서 경영주가 조합에 가입한 경우에, 경영주의 가족원은 이들 조합에 가입할 수 없게 된다. 이와 같이 복수조합원 제도를 지역 축협과 품목별·업종별 농협까지 확대함으로써 여성조합원 및 여성 임원의 비율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93) 송수인·김현주, 환경보건 관련 행정기관 위원회의 성별대표성 현황과 개선과제, 이화센터법학 제12권 제3호, 2020, 122쪽 참조.

## 제4절 성별 통계 생산의 근거 마련

분석 대상 법령에서 실태조사나 통계 생산 규정을 살펴본 결과 성별에 따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보장한 것이 있는 반면, 성별을 규정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성별 통계 생산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성별 통계는 성인지 정책 수립 및 시행에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개별 법령에서 성별에 따른 통계를 생산할 수 있는 근거를 모두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고, 기본법 등에서 성별통계 생산의 근거를 규정하여 농업·농촌 분야에서의 성별통계 생산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 농어업인등에 대한 복지실태 등 조사에서는 성별에 따른 통계가 생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률에 근거 규정이 없고, 하위법령에서도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규정에 농어업인들의 성별에 따른 내용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거나, 하위법령에 실태조사의 사항으로서 농어업인 등의 성별에 따른 복지실태 등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에서 농업법인의 운영실태에 관한 실태조사를 규정하면서 조합원의 성별에 따른 통계 생산의 근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조합원의 인적 사항을 조사하는 경우에 성별에 따른 통계가 생산되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농업·농촌 분야에서 성별 통계 생산이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농업식품기본법 등에 실태조사를 통한 지표 생산 등에 있어서 인적 통계를 생산할 경우에는 성별로 구분하여 결과를 산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다. 현재 농림어업총조사 규칙에서는 제4조(조사사항)에 가구주 및 가구원의 성별이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농업식품기본법을 비롯한 농업·농촌 분야 법령에서는 실태조사나 통계 작성시 성별에 따른 통계를 생산할 수 있는 일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만큼, 농업식품기본법에 별도 규정을 신설하거나, 제6조(정책 수립·시행의 기본원칙)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을 세울 때에는 주기적인 통계조사를 바탕으로 하여야 하며, 이러한 통계는 인적 사항에 대한 것일 경우에는 성별에 따라 분리하여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초·중등교육법」 제11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5에서는 교육통계조사 실시의 근거와 교육 관련 지표와 예측 통계 작성시 성별 구분할 것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참고할 필요가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 2021. 6. 23.] [법률 제17664호, 2020. 12. 22., 일부개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21. 6. 23.] [대통령령 제31790호, 2021. 6. 22., 일부개정]
<p>제11조의2(교육통계조사 등) ① 교육부장관은 초·중등교육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초·중등교육 연구에 필요한 학생·교원·직원·학교·교육행정기관 등에 대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하여 교육통계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p> <p>② 교육부장관은 초·중등교육 정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평가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통계조사(이하 이 조에서 "교육통계조사"라 한다)로 수집된 자료와 「통계법」 제3조에 따른 통계 및 행정자료 등을 활용하여 교육 관련 지표 및 학생 수 추계 등 예측통계를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p>	<p>제13조의5(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의 작성 등) ①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이하 이 조에서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학생 및 졸업생에 관한 지표</li> <li>2. 학교의 교원 및 직원에 관한 지표</li> <li>3. 학교의 교육여건에 관한 지표</li> <li>4. 학생 수 추계 및 예측</li> <li>5. 그 밖에 초·중등교육 정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평가를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li> </ol> <p>② 교육부장관은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를 작성하기 전에 해당 지표 및 예측통계 작성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계획에는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의 개발·산출·관리·활용·공개 등과 관련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③ 교육부장관은 인적(人的) 사항과 관련한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를 작성할 때에는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하여 그 결과를 산출해야 한다.</p>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 제5장

## 결론



## 제5장

## 결론

현재 농촌의 인구가 점차 감소하고,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농업 형태도 여성이 많이 종사하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고, 여성의 농사일 담당 비중이 평균 53.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농업·농촌 분야에서 여성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성농업인들 중에서 남성보다 지위가 낮거나 예전보다 높아졌지만 여전히 남성보다 낮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81.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이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 권익 증진,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01년 「여성농업인 육성법」이 제정되고 여성농업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수립,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여성들의 체감도가 높지 않은 것은 이와 같이 그 지위가 제대로 확보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다양한 정책의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여성농업인으로서 인정받아야 하는데, 현행법상 농업인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그 자격의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농업에 종사하는 모든 여성이 농업인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농업과 농촌은 농가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남성 중심의 가족 문화 및 질서가 잔존하는 경우가 많아 여성들은 남성들과 함께 농업에 종사하고, 농업을 함께 경영하고 있는 경우에도 제대로 그 지위 및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즉, 농지 소유 등 경제활동의 주체는 여전히 남성이 되는 경우가 많고, 이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 각종 보조금 등 수령, 농협 등 조합 가입도 남성이 주로 하게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이 농업과 농촌 분야에서 여성들의 지위를 향상하고 복지를 비롯한 권익을 증진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며, 이는 관련 정책과 그 근거가 되는 법령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해야 하는 근거가 된다고 할 것이고 이를 통해서 농업·농촌 분야에서 성평등 실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3개 법률과 그 하위법령을 분석 대상으로 삼아 현재 성별영향평가에 적용되고 있는 네가지 기준,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 특성, 성별 균형 참여, 성별 통계에 근거하여 분석을 수행한 결과, 성별에 따라 차별적 효과를 유발하는 조문을 발굴하였고, 이에 대한 선행연구,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우선, 성별 구분 또는 성별 고정관념과 관련하여 분석 대상 법령에서는 ‘여성농업인의 육성’(농업식품기본법), ‘농촌 여성의 복지증진’(농어업인삶의질법)이라는 성별 구분 조항이 존재하였는데 이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있었던 여성들을 육성, 지원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았다. 다만, 여성농업인에 대해서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근거하여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 실태와 정책 현황에 대해 비교적 쉽게 파악할 수 있었으나, 여성농업인에 해당하지 않는 전체 여성이 정책의 대상에서 소외될 수 있는 점이 우려되었다. 또한, 농업·농촌 분야에서 여성들을 농사 일 외에도 가사노동, 양육, 부양 등 돌봄의 역할도 담당해왔기 때문에 자칫 돌봄이 여성의 몫인 것으로 여기는 고정관념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농어촌 여성의 복지증진에 관해 보육여건 개선을 규정한 것은 보육여건 개선을 통해서 농어촌 여성의 복지가 증진될 수 있는 측면이 있으나, 보육이 여성의 몫, 책임이라는 인식에 근거한 것이고 이러한 인식을 강화할 수 있으므로 보육여건 개선은 특정 성의 복지 증진에 관한 것이 아니라 농어촌의 성평등 실현을 위해 필요한 과제로 분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가족 중심의 농업 구조에서 남성이 농지 소유자, 경영 대표자이고, 배우자인 여성은 농업에 종사하면서 남편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아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에 있어서도 남성은 경영주, 여성은 경영주의 배우자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와 같이 농가에서 여성들은 농업 경영을 함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의 대표자로서의 지위가 전혀 인정되지 않음에 따라 공동경영주 제도를 신설하여 여성도 남성과 함께 농업경영체를 경영하는 주체로 인정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공동경영주는 실제로 경영주와 대등한 지위를 가지지 않으며, 경영주와는 달리 겸업소득이 있을 경우 등록 자체가 되지 않는 차별을 받고 있다. 이러한 점을 시정하기 위해 겸업 소득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농업인 자격을 인정

받을 수 있는 예외를 규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공동경영주를 경영주와 마찬가지로의 지위를 가지고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법령에 직접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성별 특성과 관련해서는 농업식품기본법에 규정된 가족농가의 경영안정과 농업종사자의 전문인력으로서의 양성에 있어서도 성별 특성의 고려가 필요하다는 과제를 도출하였다. 가족농가의 경영안정 등을 위한 육성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는 우선 가족 내에서의 경영 합리화가 필요하며, 해외에서 인정된 가족경영협약 등의 도입을 통해 가족 내에서의 성평등 실현이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가족구성원을 포함한 농업종사자를 전문인력으로 양성함에 있어서도 그 유형과 성별 등 특성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할 것이므로 여기에서도 성별 고려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농어업인삶의질법에서는 농어업인의 작업환경의 차이에 따라 유발 질환에도 차이가 있음이 인정되는 만큼 농어업인의 질환 예방·치료 지원시책을 마련할 경우에 이와 같은 성별의 차이를 고려하도록 명시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성별 균형 참여에 관해서는 「양성평등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의 비율이 60%를 초과하지 못하므로, 대부분의 위원회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원회 구성에 성별을 고려하도록 명시하지 않더라도 여성인 위촉직 위원의 비율이 40%를 상회하고 있으므로 위원회 규정에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자 하는 문구를 추가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농어업인삶의질법 시행령 제6조와 같이 위원회 구성에 ‘성별을 고려하여’를 규정한 예도 있으므로 법률과 시행령에 통일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성별 균형 참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위원회의 논의 사항에 대한 성별 관련성을 사전 검토하거나, 위원들에 대한 성인지 교육의 실시 등 제도적 보완책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농협 등 생산자단체에 대해서도 여성 조합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여성임원할당제가 실시되고 있음에도 여성임원의 비율이 낮은 현실을 고려해볼 때, 여성의 조합 가입이나 임원 선출에 장애가 되는 요소들을 발굴하고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성별 통계는 성별에 따른 차별적 효과의 발생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기초 자료로써 농업·농촌 분야의 성평등 실현을 위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개별 법령에 통계 생산이나 실태조사 시 성별을 포함하도록 명시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고, 농업·농촌 분야의 기본법인 농업식품기본법에 성별통계 생산에 관한 규정을 두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농업·농촌에서의 성평등 실현은 단지 여성농업인 육성 정책의 목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농업·농촌 정책 전반에서 추구해야 할 헌법적 가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농업·농촌에서의 성평등 실현이 선결 과제가 된다는 점에서, 특정 성에게 차별적인 요소들을 발굴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성인지적 관점은 정책과 법령의 입안 및 시행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참고문헌



## 참고문헌

### I. 국내문헌

- 김경미 외, 여성농업인의 법적 지위 부여를 위한 시론적 접근, 아시아여성연구, 제40호, 2001.
- 김경미 외, 여성농업인에 대한 정책적 지원 강화 방안: 여성농업인 육성 5개년계획 평가와 제언을 중심으로, 한국농촌지도학회지, 제12권 제1호, 2005.
- 김유창 외, “농작업에서 성별에 따른 근골격계 질환 조사”, 대한인간공학회 2010 추계 학술대회 발표자료, 2010.
- 김은경 외, 농촌종합개발 ODA 사업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여성가족부 연구용역보고서, 2016.
- 박선영 외, 법령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여성가족부 연구용역보고서, 2013.
- 사동천, 농업식품기본법상 공익적 가치의 반영, 홍익법학 제20권제3호,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 사동천, 개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관한 고찰, 법학논총 제15권제2호,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08.
- 송수인·김현주, 환경보건 관련 행정기관 위원회의 성별대표성 현황과 개선과제, 이화젠더법학 제12권 제3호, 2020.
- 안 석 외, 2018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농림축산식품부 연구용역 보고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9.
- 여성가족부, 2021년 성별영향평가 지침, 2021.
- 오미란, 여성농업인의 지위평등성 확보를 위한 법적제도 개선방안, 젠더법학 제1권제1호, 한국젠더법학회, 2009. 3.
- 이수미, 여성농민 성불평등 실태조사를 통해 본 여성농민의 현실과 성평등한 농촌, 성평

등한 농촌! 여성 농민 법적 지위 보장을 위한 여성농민 정책대토론회 자료집, 2020. 8. 19.

이은국 외,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정책 성별영향분석평가, 여성가족부 연구용역보고서, 2012.

이진영 외, 농업인의 지위인정 범위와 관련제도 정비 방안 연구, 농촌진흥청, 2006.

임소영 외, 제5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2021~2025) 수립방안 연구, 농림축산식품부 연구용역보고서, 2020.

임소영 외, 농가 및 농업인 정의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0.

정은미 외, 여성농업인 지위 향상을 위한 농업경영체 제도 개선 연구, 농림축산식품부 연구용역 보고서, 2020.

정은미 외, 2017년 6차 산업(농업융복합산업) 특정성별영향평가, 여성가족부 연구용역 보고서, 2017.

정은미 외, 여성농업인의 경제·사회적 역할 제고방안(2/2차연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3.

정혜진·장미, 2018 경기도 성인지 통계,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2018.

주재선 외, 2012 한국의 성 인지 통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2.

## II. 웹사이트 검색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O1M3Q0Q4Z1M9A1D0X1W7Q4S8A8J6O9](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O1M3Q0Q4Z1M9A1D0X1W7Q4S8A8J6O9))(2021. 6. 25 최종 검색)

네이버지식백과-행정학사전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76872&cid=50301&categoryId=50301>)(2021. 6. 25 최종 검색).

농림축산식품부 법령정보 ([https://www.mafra.go.kr/mafra/353/subview.do#law\\_info01\\_01](https://www.mafra.go.kr/mafra/353/subview.do#law_info01_01))(2021. 6. 25 최종 검색).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위원회 현황(2021년 5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공개 자료(<https://www.mafra.go.kr/mafra/366/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bWFmcmElMkY3MSUyRjMyNzI3MiUyRmFydGNsVmllldy5kbyUzRg%3D%3D>)(2021. 6. 25 최종 검색).

농업용어사전 (<https://www.nongsaro.go.kr/portal/ps/psq/psqb/farmTermDicLst.ps?pageIndex=1&pageSize=4&menuId=PS00064&searchTagWord=%EB%86%8D%EA%B0%80&option=0&sWordNm=%EB%86%8D%EA%B0%80>)(2021. 6. 25 최종 검색).

### Ⅲ. 신문기사 및 보도자료

“내년 ‘여성농민 특수건강검진사업’ 시범 추진”, 농민신문 2021년 1월 6일 기사 참조(<https://www.nongmin.com/news/NEWS/POL/GOV/331617/view>)(2021. 6. 25 최종 검색).

“농식품부, 제5차 (‘21~‘25)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추진”, 농림축산식품부 2020년 12월 31일 보도자료 참조(<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30083>)(2021. 6. 25 최종 검색).

“여성농업인 농사일 비중 지속 증가, 수요 고려한 정책 필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9년 3월 20일 보도자료(<https://www.krei.re.kr/krei/selectBbsNttView.do?key=103&bbsNo=25&nttNo=129133>)(2021. 6. 25. 최종검색).

“여성농업인 정책 핵심키워드는 역량 강화·성별격차 해소”, 한국농어민신문 2021년 1월 12일 기사 참조 (<https://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2124>)(2021. 6. 25 최종 검색)

“지역농협 유리천장, 얼마나 깨졌나?”, 한국농정, 2020년 7월 12일 기사 참조(<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1379>)(2021. 6. 25 최종 검색).

“지역축협·품목농협도 복수조합원제 도입하도록 최선”, 농민신문 2020년 6월 8일 기사  
참조(<https://www.nongmin.com/plan/PLN/SRS/323268/view>) (2021. 6.  
25 최종 검색).

현안분석 21-05  
농업·농촌 분야 법령의 성인지적 개선 방안 연구

2021년 06월 26일 인쇄  
2021년 06월 28일 발행

발행인 | 김 계 흥

발행처 | 한국법제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15  
(반곡동, 한국법제연구원)  
전화 : (044)861-03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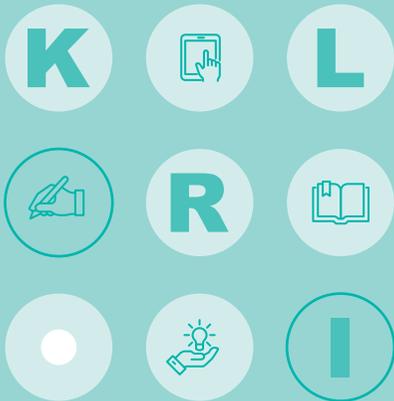
등록번호 | 1981.8.11. 제2014-000009호

홈페이지 | <http://www.klri.re.kr>

값 7,000원

1. 본원의 승인없이 전재 또는 역재를 금함. ©
2. 이 보고서의 내용은 본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

ISBN : 979-11-91865-11-0 93360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9 791191 865110

ISBN 979-11-91865-11-0

값 7,000원